2021년 전라북도의회 용역 연구 과제

전라북도 환경복지 조례 입법성과평가 연구 용역 보고서

2021년 12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전라북도의회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라북도 환경복지 조례 입법성과평가 연구 용역 보고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간: 2021. 9 ~ 2021. 12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보고서는 연구기관의 용역연구 결과물로서
전라북도의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연구 설계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대상 ·····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 4

제2장 현행 입법평가제도의 분석 ····· 5
제1절 조례 입법성과의 의의 ····· 7
1. 입법성과의 의의 ····· 7
2. 입법성과의 개념 ····· 8
제2절 조례 입법성과평가 ····· 10
1. 지방의회 입법의 정의 ····· 10
제3절 조례입법성과평가제도 현황 ····· 14
1. 입법성과평가 조례 현황 ····· 14
2. 광역의회 입법성과평가 조례 체계 ····· 15
제4절 조례입법성과평가의 비교 분석 ····· 21
1. 경기도 입법평가제도 평가기준 ····· 21
2.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제도 평가기준 ····· 22
3. 충청남도 입법평가제도 평가기준 ····· 23
4. 광주광역시 입법평가제도 평가기준 ····· 24
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성과평가제도 평가기준 비교 분석 ····· 25
제5절 전북형 조례입법성과평가의 방향 ····· 27
1. 기존 입법성과평가 제도의 시사점 ····· 27
2. 전북형 입법성과평가 기준 설정을 위한 전라북도 현황 점검 ····· 28
3. 전북형 입법성과평가 시범 진행을 위한 평가 기준 설정 ····· 29
4. 전북형 입법성과평가를 입법성과평가 조례 제정 방향 ····· 31

제3장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 33
제1절 평가 대상 ····· 37
1. 평가 대상 기준 ····· 37
2. 평가 기준 ····· 38

3. 전문가의 평가 ····· 38
제2절 평가결과 분석 ····· 39
1.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 39
2.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 41
3.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43
4.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 45
5.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 47
6.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 49
7.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 51
8. 전라북도독립유공자기념사업및예우·지원에관한조례 ····· 53
9.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5
10.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57
11.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 59
12.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61
13.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63
14.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 65
15.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 67
16.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 69
17.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71
18.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73
19.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75
20.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 77
21.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 79
22.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81
23.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83
24.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 85
25. 전라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87
26.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 ····· 89
27.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91
28.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악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 93
29.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 95
30.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 97
31.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 99
32.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 101
33.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103

제3절 평가결과 요약 ····· 105

제4장 조례입법성과 만족도조사 결과 ····· 107
제1절 조사개요 ····· 109
1. 조사 설계 ····· 109
2. 척도(Scale) ····· 110
제2절 조사결과 ····· 111
1. 전문가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요약 ····· 111
2. 조례입법성과평가 대상 조례 관련 사업 수혜자 만족도조사 결과 ····· 112

제5장 결론 ····· 113
제1절 연구 개요 ····· 115
제2절 입법성과평가 논의 및 기존 입법성과평가 제도의 시사점 ····· 115
1. 논의를 통한 입법성과평가의 정의 ····· 115
2. 기존 입법성과평가 제도의 시사점 ····· 116
제3절 전북형 입법성과평가를 위한 전라북도 현황 및 평가 기준 설정 ····· 117
1. 전라북도 성과평가 등의 현황 ····· 117
2. 전북형 입법성과평가 시범 진행을 위한 평가 기준 설정 ····· 117
제4절 전북형 입법성과평가를 위한 전라북도 조례 시범 평가 ····· 118
제5절 전북형 조례입법성과평가의 제도화 방향 ····· 120
1. 조례 입법성과평가 제도화를 통한 조례입법성과 고도화 ····· 120
2. 시범적인 조례 입법성과평가를 통한 조례입법성과 고도화 ····· 121

부록 ····· 123
제1절 조례입법성과평가 상세 결과 ····· 125
제2절 조례입법성과평가 대상 조례 모음 ····· 158
제3절 조례 입법성과평가 관련 다른 자치단체 조례 사례 ····· 222

【 참고문헌 】 ····· 237

<요약>

○ 전라북도의 각종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조례 활용에 따른 입법 영향 및 입법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여 환경/복지 관련 조례 중 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별 사후 입법평가와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의 예산성과평가로 자치법규 정비와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규범적 평가에서 나아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등에 대한 실효적인 성과평가를 토대로 전북도에 특화된 입법성과평가를 제도화하고자 전국 주요 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성과평가를 점검하고, 제도 현황과 평가 기준 등을 점검하였음

○ 이를 토대로 환경복지위원회 관련 제정된지 2년 이상 경과한 환경/복지 조례 중 33개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른 공무원 면담 및 전문가 평가와 관계자 체감 만족도를 측정함

입법성과평가 논의 및 기존 입법성과평가 제도의 시사점

○ 기존의 입법성과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는 수준, 즉 제도화를 위한 투입의 성과, 제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의 성과, 그리고 제도화가 이뤄지는 산출의 성과 등을 의미하는 데에서 머물고 있었기에 이에 한 걸음 나아가 입법의 영향 측면에서 각급 기관에서 시행 중인 법률이나 조례가 입법 목적에 따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및 정도를 강조함

○ 이러한 측면에서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조례의 입법성과란 전라북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입법 목적에 따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수준 및 정도"**라고 정의하였음

○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의 입법성과평가 조례를 분석한 결과 조례의 합목적성, 실효성, 적정성 등 평가 구조와 기준이 유사하며, 대체로 입법 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실효성, 적정성, 공평성, 민주성, 지역 실정 부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하여 규범적 측면의 평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조례의 수혜자에 대한 범주화나 조례에 기반을 둔 사업 등의 성과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라북도는 이 분야에 특화시켜 제안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일부 도의회의 경우 의회에서 입법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였음

○ 아울러 평가의 결과를 통보받는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거나 집행기관이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 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였음

○ 여기서 전라북도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주요 평가기준, 입법(성과)평가 조례에 소관부서의 입법(성과)평가 반영, 집행기관 차원의 입법(성과)평가 종합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이며, 조례의 수혜자에 대한 범주화나 조례에 기반을 둔 사업 등의 성과 등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을 확인함

전북형 입법성과평가를 위한 전북도 현황 및 평가 기준 설정

○ 전라북도 차원에서 조례입법성과평가를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전라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전라북도 직무성과평가 운

영지침」을 참고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매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고 있고, 예산의 성과보고서도 결산안과 함께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

○ 다른 시도의 입법성과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준을 7개 차원, 22개 항목으로 설계하여 각각의 조례에 대한 종합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되 7개 차원의 가중치는 ①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15, ②조례의 실효성 20, ③조례 내용의 적정성 20, ④조례의 공평성 10, ⑤조례의 민주성 10, ⑥지역실정 부합성 10, ⑦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로 설계함; 다만 적정 가중치는 조례입법성과평가가 제도화되어 시행에 들어갈 때 AHP 등을 통한 적용을 제안함

전북형 입법성과평가를 위한 전북도 조례 시범 평가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전라북도청의 환경녹지국/복지여성보건국/새만금해양수산국/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한 조례들 중 ① 제정된 지 2년 이상 경과, ② 법령위임이 규정이 없는 자치법규 에 국한하여 33개 조례에 대해 전북형 입법성과평가 시범 진행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7개 차원, 22개 항목)하여 조례의 담당 실국에 따라 환경 전문가 1명, 복지 전문가 1명, 법학전문가 2명, 성과관리/성과평가 전문가 2명 등 총 6명이 참여하였으며, 각 조례별로는 전문가 5명이 평가함

○ 조례입법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종합성과점수가 가장 우수한 조례는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로 나타났음

○ 조례입법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주관적인 종합의견점수가 가장 우수한 조례는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나타났음

❍ 조례입법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종합성과 및 종합의견점수가 모두 우수한 조례는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나타나 종합성과와 종합의견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됨

❍ 전문가 평가 결과 차원별 100점 환산 점수는 7개 차원 중 5개 차원에서 9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조례의 실효성(계획, 예산확보 및 집해, 사업수행) 차원은 89.6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차원은 71.2점으로 나타나 향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유의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별로 수혜자 등 정책고객 등에 대한 확보나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혜자 등에 의한 개별 조례성과에 대한 만족도 점검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하여 시범적으로 13명의 유효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례 인지 여부, 조례에 의해 관련 사업 예산의 적정 확보와 집행,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지원 대상 및 수혜자의 적정 선정,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지원 대상 및 수혜자의 사후 관리,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조례에 따른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의 적정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 수혜자 등의 만족도 조사 결과 조례 인지도와 주민의견 수렴이 80점대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70점대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조례의 의해 관련 사업 예산의 적정 확보와 집행 문항이 가장 낮은 70.76점을 기록함

전북형 조례입법성과평가의 제도화 방향

❍ 주요 자치단체의 선행 조례 입법성과평가 조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 제정 방향을 제안함

① 입법 목적 등이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② 입법성과평가의 대상은 전라북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하며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제외함

③ 입법성과평가는 투입, 과정, 산출 성격의 내용에서 나아가 조례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 등을 검토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조례 관련 사업의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반영 여부, 조례 관련 수혜자 등의 관리 및 운영 실태

④ 입법성과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위원 구성에 규범적인 측면의 전문가 이외에 입법평가 또는 성과평가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함

⑤ 다수의 조례에 대한 입법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연구기관에 위탁

⑥ 입법성과평가의 반영과 관련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라북도의회에 보고하는 예산의 성과계획 서 및 예산의 성과보고서 등 조례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분야를 제시

❍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33개 조례에 대한 분석 및 공무원 면담, 전문가 평가, 관련 고객 체감도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① 기본적으로 의회에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나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사업 및 예산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이렇게 명시해야만 어떠한 조례가 실효적으로 목적을 실

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가 있음

② 각 조례별로 수혜자 및 위원 관련 정책고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조례의 목적이 어느 정도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자체평가의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③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위원회 활용이나 자체 관리하는 고객 등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형태의 만족, 인지, 체감 등에 대한 간이 조사 혹은 직무성과관리와 관련된 비계량지표 형태의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화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함

제1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 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라북도의 각종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조례 활용에 따른 입법 영향 및 입법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 필요

❍ 환경/복지 관련 조례 중 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별 사후 입법평가와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의 예산성과평가로 자치법규 정비와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규범적 평가에서 나아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등에 대한 실효적인 성과평가를 토대로 전라북도에 특화된 입법성과평가 제도화

2. 연구의 대상

❍ 환경복지위원회 관련 제정된지 2년 이상 경과한 환경/복지 조례

❍ 2020년 예산/결산서 및 예산의 성과 계획서/보고서 예산/결산 연계 조례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와 법령 위임조례는 대상에서 제외)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전라북도 지역 내

❍ 연구방법

- 선행 및 문헌 연구고찰
- 평가 기준 설정을 위한 비교 분석
- 집행기관 서식 작성(연구진, 실국/부서별 관련 조례 담당)
- 평가기준에 따른 전문가 평가
- 정책고객 체감도 측정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 조례 입법평가 비교 분석 및 평가 기준 발굴
- ○ 조문 중심의 규범적인 평가 기준
- ○ 의회 제출 예산/결산서 및 예산성과계획/보고서 연계 평가 기준
- ○ 전북형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발굴

□ 전라북도 환경/복지 관련 조례 현황
- ○ 환경녹지국 산하 부서 및 조례 현황
- ○ 복지여성보건국 산하 부서 및 조례 현황
- ○ 관련 조례 제정 추세 및 관련 예산 투입 현황

□ 환경/복지 조례 관련 시론적인 입법성과평가
- ○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한 규범적 평가
  - – 조문에 따른 규범적 평가
  - – 연구진에서 위촉하는 입법/제도 전문가
  - – 연구진에서 위촉하는 환경/복지 전문가
- ○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한 성과 평가
  - – 관련 부서별 위원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입법 영향 등 평가
- ○ 관련 조례 고객(관련 부서 협조를 전제로 함)
  - – 관련 부서별 위원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입법 영향 등 평가

□ 기대 효과 및 정책 제언
- ○ 기대 효과
  - – 조례 개선 및 정비 기회
  - – 우수 조례 발굴
  - – 추후 발굴할 조례안 제시
  - – 조례 개선 및 정비 기회
- ○ 정책 제언: 전라북도의회 차원
  - – 조례 입법성과평가 조례안 발굴

제2장 현행 입법평가제도의 분석

제1절 조례 입법성과의 의의 ····· 7
제2절 조례 입법성과평가 ····· 10
제3절 조례 입법성과평가 제도 현황 ····· 14
제4절 조례 입법성과평가의 비교 분석 ····· 21
제5절 전북형 조례입법성과평가의 방향 ····· 27

제1절 조례 입법성과의 의의

1. 입법성과의 의의

○ 지방의회 구성 이후 조례입법의 성과에 대한 평가 제도화는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의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경기도의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 입법평가, 전라북도교육청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조례 사후평가 등에 관한 조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주요 자치단체 사례에서 보듯이 조례입법의 성과는 사후 입법평가, 입법영향분석, 입법평가, 사후평가 등을 통해 측정되거나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성과(performance)란 조직이나 구성원이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사업, 정책과 그 활동의 현황, 수준 및 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과정과 결과는 경제·능률·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음. 이를 토대로 해서 입법성과는 각급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조례가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및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입법평가, 입법영향분석, 입법평가, 사후평가 등을 통해 측정되거나 평가되는 것은 모두가 입법성과에 관한 것으로 성과를 어디까지 측정할 것인가는 기관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입법성과는 논리상으로는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 등을 표기하는 지표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가 있어야 함

○ 기본적으로 입법성과는 입법 목적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음. 이를테면 입법의 효과성, 입법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입법 목표의 편익에 따른 효율성, 입법 시행에 따른 사회 상황의 개선 효과, 그리고 윤리적 측면 등을 토대로 검토할 수 있음(홍준형 외, 2006, 15).

○ 지방의회의 부활과 함께 30여년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고, 전문성 부족은 지방의회의 의정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함

○ 지방의회 자체가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조례의 성과를 점검하는 것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할 것임

2. 입법성과의 개념

1) 입법의 필요성 측면

○ 국내에서 입법성과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즉 제도화를 위한 투입의 성과, 제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의 성과, 그리고 제도화가 이뤄지는 산출의 성과 등을 의미함

○ 입법성과의 초기 인식은 법률안 상정 및 심의 활동과 관련하여 법안 상정 건수나 의원 입법 건수, 의원 발의안 통과 건수 등을 토대로 제도화에 이르는 입법 생산성 측정 수준이었음(함성득·임동욱, 2000, 103;

○ 발의 건수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따라 입법성과를 측정하는 경우에도 입법성과를 입법 생산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서재권·강민성, 2021, 258).

○ 입법성과는 그야말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그 제도를 마련하는 것, 즉 제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투입, 과정 및 산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1)]

1) 법제처는 지난 5년간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정부가 국회, 국민과 함께 만든 입법성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위기극복 정부로서 분야별 주요 입법성과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입법성과는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에 이르는 입법 산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 입법의 영향 측면

○ 입법 제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투입, 과정 및 산출에서 더 나아가 투입, 과정, 산출이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입법성과로 이해할 수 있음.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는 경우 입법성과는 입법을 통해 획득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의미함(오용식·김수용·김성호, 2008, 104).

○ 입법에 따른 제도가 효율적인지,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입법성과를 이해하는 경우 입법성과는 효율성과 적정성과도 연관될 수 있음

○ 각급 기관에서 시행 중인 법률이나 조례가 입법 목적에 따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및 정도를 입법성과라고 할 때 입법성과는 단순히 입법의 필요성이 아닌 입법의 영향이 미치는 효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조례의 입법성과란 전라북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입법 목적에 따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수준 및 정도"**라고 정의하고자 함

3) 입법의 성과 평가 측면

○ 환경 관련 조례의 제·개정으로 관련 사안이 잘 해결되고 있다거나 혜택이 확산되는 데에서도 입법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복지 관련 조례에 의한 지원 시책이 수혜자의 생활을 향상시키거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조례의 입법성과를 거론할 수 있을 것임

○ 환경 관련 사안이 관련 조례 제·개정과 집행으로 지속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입법성과가 추출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복지 관련 사안이 조례 제정과 집행으로 생활이 향상되고 만족도가 제고되고 있다면 **입법성과가 추출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제2절 조례 입법성과평가

1. 지방의회 입법의 정의

○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헌법 제97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법률로써 「지방자치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조)

○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명시하며 동법 제39조에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권한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두고 있음

○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어 구성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행위는 해당 지역의 범위에서 민주적으로 정당화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사무를 규율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보장받음

○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의 권한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에 의해 자치입법권을 부여받아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의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 가능한 행정입법과 구별됨

○ 이러한 자치입법 주체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지역출신의 입법주체자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의의를 가지며, 국회 혹은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민원을 수렴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2021년 12월 현재 지방의회의원 정수는 민선7기 기준 3,756명[2]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및 규칙은 116,185개로 나타남

○ 전국기준 연도별 조례 현황은 2012년 58,531개에서 2020년 91,100개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규칙(개)	23,423	23,801	23,687	23,694	23,782	24,087	24,391	24,733	25,085
조례(개)	58,531	61,894	63,476	67,549	71,220	75,708	79,288	85,414	91,100
계(개)	81,954	85,695	87,163	91,243	95,002	99,795	103,679	110,147	116.185

2. 조례 입법성과평가의 필요성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입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조례에 대해 입법성과를 평가하고자 사후 입법평가, 입법영향분석, 입법평가, 사후평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에 있어 법규의 효율성과 규범성 등을 제고해야 하는 필요성과 관계가 있음(최혜선, 2017, 40)

○ 입법평가에 대한 정의시 대부분 입법목적이 효과를 달성했는지 검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최유, 2016, 180) 이러한 입법평가의 등장은 지방자치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조례에 대한 사전 혹은 사후적인 관리 및 평가와 무관하지 않음

○ 조례 입법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이유는 입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입법의 효과 및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다시 입법에 환류하여 조례의 실효성 저하와 수용성 한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전조치가 가능케 하자는 것임. 더불어 사후적으로 입법의 합목적성과 목표설정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여 추후 조례 제개정시에 합리적인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임(충남연구원, 2020, 8)

2) 광역단위 지방의회의원 824명, 기초단위 지방의회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도) 5명

○ 기존의 조례 입법평가는 자치입법으로 제정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주로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조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 신뢰 제고, 조례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 확보, 유사 조례에 대한 개정 및 폐지를 통한 자기통제 강화 등을 기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입법의 필요성이 아닌 입법의 영향이 미치는 효과로 보는 입법성과는 조례입법평가를 입법을 통해 획득하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로 이해할 수가 있음

○ 단순히 사전적인 입법 제도화에서 나아가 입법을 위한 투입, 과정, 산출에 따른 제도화가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입법성과로 이해하는 경우 입법영향 평가는 구체적으로는 입법성과에 대한 평가로 간주할 수 있음

○ 조례 입법성과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사안이 해결된다거나 혜택이 확산되는 현상을 파악하고 측정해야만 해당 조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임

○ 조례입법성과평가가 단순히 규범 위주의 영향에서 나아가 규범이 산출되어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를 측정해야 할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 해당 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수혜 고객, 예산,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토대로 실제 조례가 가동된 성과는 고객만족도, 예산성과, 위원회 운영 성과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입법성과평가의 제도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3. 입법평가와 정책평가의 비교를 통해서 보는 입법성과평가

○ 입법평가는 제·개정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대해 소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효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추후 입법에 반영하여 추후 나은 법규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정책평가는 정책에 대해 일련의 수립, 집행, 결과를 통해 그 영향을 사후에 검증하는 것으로 정

책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의미함

○ 입법평가는 일반적으로 입법의 고도화 및 실현가능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법규범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책평가는 법규범에 기반되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조례입법평가는 조례를 기반으로 하는 규범적 판단을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지만 정책평가는 규범에 기반한 정책의 성과 증진을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검증하는 경향을 보임

○ 입법평가와 정책평가는 평가라는 관점에 있어 평가의 객관성 및 과학적 방법의 확보에서는 유사하지만 평가의 대상과 방법 등 평가의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례입법성과평가는 법규범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입법평가와 사후 집행을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정책평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조례의 성과는 최종적으로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자원의 투입, 제정 및 개정 과정, 그리고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조례의 산출이라는 성과에서 나아가 제정 혹은 개정된 조례가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결과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성과평가는 입법평가와 조례의 영향에 따른 정책평가를 동시에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3)]

○ 이러한 측면에서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조례 입법성과평가는 전라북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수준 및 정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조례라는 규범에 대한 사후 평가와 함께 실제로 조례 집행에 따른 문제해결이나 수혜에 대한 인지, 체감, 만족도 등의 결과까지도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함

3) 집행기관은 모든 예산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기에 이 과정에서 조례 관련 예산의 집행 상황과 성과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조례 입법성과평가제도 현황

1. 입법성과평가 조례 현황

○ 일반적으로 입법성과를 평가하는 조례의 목적은 자치법규의 합목적성, 목표달성 등을 분석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주민들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 또한, 일부 입법성과평가 조례의 경우, 입법평가를 통한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을 목적에 두고 있음

○ 현재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등 9곳으로 나타남

○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산광역시 진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기 부천시, 경기 수원시, 경기 파주시, 경북 예천군, 충남 부여군, 충남 천안시, 충남 당진시, 충남 아산시, 충북 제천시, 전남 진도군, 전남 여수시,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전북 익산시, 전북 장수군 등 40곳이 조례 입법평가를 제도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도 사후 입법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 조례는 사후단계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사전단계를 포함하여 시행함

○ 조례 입법평가의 평가주체는 집행부와 입법부로 구분되며, 집행부가 평가주체로 둘 경우에 입법평가에 대한 외부평가로 공정성과 객관성은 확보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제도의 기관대립적 성격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별도의 입법평가위원회를 두어 의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운영함

○ 조례 입법평가의 평가주체를 입법부에 둘 경우, 의회 산하에 입법평가위원회를 두어 자체 운영하여 자기통제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는 전문가 등 외부인사들의 참여나 위탁을 통해 통해 시행할 수도 있음

자치단체별 조례 입법평가 주체

구분	집행부(단체장) 입법평가	입법부(의회) 입법평가
광역 지자체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기초 지자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 광역의회 입법성과평가 조례 체계

1)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 입법영향분석 조례 목적

○ 경기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경기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대상 및 적용범위

○ 해당 조례에 의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임.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제외
○ 해당 조례에 의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함
○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

□ 입법영향분석의 주체

○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 의해서 실시되며, 그 결과는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 첨부된다. 상임위원장은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의 조례심의 이전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의장이 구성하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용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입법정책위원회 운영 근거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도의회의원 7명과 입법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6명 등 총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분석

○ 입법영향분석을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 보다 세밀한 평가가 가능함

○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례안을 평가할 수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입법평가 조례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대상 및 적용범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입법평가 조례는 현행 조례 중 제정된지 2년 또는 전부 개정 이후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로 함

○ 평가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조직·인사 또는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함

□ 입법평가의 주체

○ 입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의회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소속 활동 인원, 그 밖에 입법평가 관련 분야의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2년 임기 위원으로 구성

□ 분석

○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로 입법평가위원회를 두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외부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 활동함

○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법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음

○ 입법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부서 의견 청취 및 자료를 요

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함

3)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입법평가 조례 목적

○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대상 및 적용범위

○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함
○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입법평가의 주체

○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장이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의회의원,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 인원,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분석

○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

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시행된지 3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 실시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의 지속적 영향 평가가 가능함

4)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입법평가 조례 목적

○ 광주광역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대상 및 적용범위

○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조례로 함

○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입법평가의 주체

○ 광주광역시장은 사후 입법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광주광역시 기획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인원 15명 이내로 구성함

□ 분석

○ 조례 입법평가의 주체가 집행부로, 별도의 입법평가 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구성에 의회추천 인사를 반영하고 있음

○ 위원회는 사후 입법평가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구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평가 목적	조례 실효성 확보 의원입법활동 지원 도민 권익증진	조례 실효성 확보 도민 권익증진	조례 실효성 확보 도민 삶의 질 향상	조례 실효성 확보 시민 삶의 질 향상
평가 방식	사전 입법평가 사후 입법평가	사후 입법평가	사후 입법평가	사후 입법평가
대상 및 적용범위	제정 중 조례 전부개정2년경과 입법평가4년경과	제정조례 전부개정2년경과 입법평가4년경과	제정조례 전부개정3년경과 입법평가4년경과	제정조례 시행후2년경과조례
평가 주체	의회입법정책위원회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회 기능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기준수정 · 심의	입법평가 입법평가 분석지표 변경	입법평가 입법평가제도및결과개선	입법평가 입법평가결과반영및개선안마련 입법평가결과통보서작성및통보
평가 기준	6개 평가항목23개 세부항목	8개 평가항목30개 세부항목	8개 평가항목35개 세부항목	6개 평가항목 9개 세부항목
평가 용역	입법영향분석 용역 실시가능	입법평가용역 실시가능	입법평가용역 실시가능	-
평가자료 제출요구 등	조례발의의원및제출 집행부 의견 청취	대상조례소관부서 자료제출 요구 전문가 자문	소관상임위원회,집행기관소관부서의견청취및자료제출요구	조례관계공무원설명 또는자료등제출요구
평가 결과 활용 등	평가결과공표 상임위 혹은 집행부 통보 및 적극반영 조례개정 혹은 폐지 공적포상	평가결과홈페이지공표 상임위 혹은 집행부 통보 및 적극반영	평가결과홈페이지공표 상임위 혹은 집행부 통보 및 적극반영	주관부서에통보 및 개선권고사항반영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

제4절 조례입법성과평가의 비교 분석

○ 전라북도에 적합한 조례입법성과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자치시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

1. 경기도 입법평가제도 평가기준

○ 경기도는 경기도의 자치법규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통해 입법에 대한 평가 분석을 진행함

○ 평가기준은 제4조 입법영향분석 기준을 통해 사전 입법영향분석과 사후 입법영향분석으로 나누어 각 별표를 첨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이 중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은 다음과 같음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위임조례/자치사무 여부
	위임조례의 위임근거 합리성
	기관위임 사무의 조례화
	조례 상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 명시
	상위법령 위배성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효성 및 효율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조례관련 예산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주민의견 수용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원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지원대상 및 범위의 적정성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필요성	현행 유지 필요성
	조례의 개정 사유 선택
	조례의 폐지 사유 선택

2.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제도 평가기준

○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법규인'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를 통해 입법에 대한 평가 분석을 진행함

○ 평가기준은 제7조 입법평가 조항을 통해 별표를 첨부하여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두어 시행함

○ 입법평가 분석의 분석항목은 다음과 같음

분석항목	세부항목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위임조례/자치사무 여부
	위임조례의 위임근거 합리성
	조례 위임범위 적절성
	조례 근거 법령 제·개정 및 폐지 여부
	조례 상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 명시
조례의 실효성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조례관련 예산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주민의견 수용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조례 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지원대상 및 범위의 적정성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제주현실 부합성	제주특별법 상 위임 사항와 조례 간 상동 여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의 근거 법령(법정·조례)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조례의 개정 사유 선택
	조례의 폐지 사유 선택
	그 밖의 의견 기술

3. 충청남도 입법평가제도 평가기준

○ 충청남도는 자치법규인‘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통해 입법에 대한 평가 분석을 진행하며, 평가기준은 제4조 평가기준 조항을 통해 6개 사항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별표를 첨부하여 제시함 입법평가 분석의 분석항목은 다음과 같음

분석항목	세부항목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위임조례/자치사무 여부
	위임조례의 위임근거 합리성
	조례 위임범위 적절성
	조례 근거 법령 제 · 개정 및 폐지 여부
	조례 상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 명시
	헌법 및 기본권 위배 조항 여부
	상위법령 위배 조항 여부
조례의 실효성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조례관련 예산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재정지원 규정 여부
	지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예산확보 및 집행의 적정성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민간위탁사무 대상의 적정성
	집행기관 재량권 범위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조례 상 차별관련 합리성
조례의 주민의견 수용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충청남도 현실 부합성	충청남도 현실과 조례 간 부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위원회의 근거 법령 여부(법정 · 조례)
	위원회 위원 성별 구성 적정성
	위원회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조례의 개정 사유 선택
	조례의 폐지 사유 선택
	그 밖의 의견 기술

4. 광주광역시 입법평가제도 평가기준

○ 광주광역시는 자치법규인‘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통해 입법에 대한 평가 분석을 진행하며, 평가기준은 제5조 평가기준 및 시기 조항을 통해 7개 사항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제4조 입법평가서 작성 조항 및 별지를 첨부하여 평가하도록함

○ 입법평가 분석의 분석항목은 다음과 같음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입법의 합목적성
계획 수립	계획의 적정성
비용과 편익의 적정성	비용 편익발생 적절성
	비용 발생의 불예측성
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 편성 · 집행의 적절성
법적 정합성	상위 법령의 개폐에 따른 적절한 조치
	개별 규정 간 모순성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위원회 성비 적절성

○ 광주광역시 입법평가제도의 평가기준은 상기 언급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의 입법평가제도의 선택형 평가기준과 다르게 문제점과 개선안을 서술하는 평가방식을 취하고 있음

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성과평가제도 평가기준 비교 분석

○ 서술형으로 기술하여 평가되는 광주광역시의 입법평가 평가기준을 제외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시도, 충청남도의 입법평가 평가기준을 부문별로 나열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분석 부문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입법 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위임조례/자치사무 여부	위임조례/자치사무 여부	**위임조례/자치사무 여부**
	위임조례의 위임근거 합리성	위임조례의 위임근거 합리성	위임조례의 위임근거 합리성
	기관위임 사무의 조례화	조례 위임범위 적절성	조례 위임범위 적절성
	조례 상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 명시	조례 근거 법령 제·개정 및 폐지 여부	조례 근거 법령 제·개정 및 폐지 여부
	상위법령 위배성	조례 상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 명시	조례 상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 명시
	타 조례와의 충돌성	타 조례와의 충돌성	**헌법 및 기본권 위배 조항 여부**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상위법령 위배 조항 여부**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타 조례와의 충돌성**
	조례관련 예산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예산 집행 충실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조례관련 예산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지원관련 규정 여부	재정지원 규정 여부
	지원대상 및 범위의 적정성	지원대상 및 범위의 적정성	지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예산확보 및 집행의 적정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민간위탁사무 대상의 적정성
			집행기관 재량권 범위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 상 차별관련 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입법예고 수행 여부	입법예고 수행 여부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부재	**제주특별법 상 위임 사항와 조례 간 상동 여부**	**충청남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부재	위원회의 근거 법령(법정·조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의 근거 법령 여부(법정·조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위원 성별 구성 적정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여부
		위원회 구성 적정성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종합의견	현행 유지 필요성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조례의 개정 사유 선택	조례의 개정 사유 선택	조례의 개정 사유 선택
	조례의 폐지 사유 선택	조례의 폐지 사유 선택	조례의 폐지 사유 선택
		그 밖의 의견 기술	**그 밖의 의견 기술**

○ 상기 나열된 광역자치단체의 분석 부문 및 세부평가 항목의 차이는 입법평가제도 관련 조례의 제정 시기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7월에 제정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경우에는 지역 실정 부합성이 없었지만 2015년 8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의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상 위임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시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내용이 아닌 규정은 삭제하도록 함

○ 이러한 논리에 따라 2019년 10월에 제정된 충청남도의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경우에도 특별자치도가 아님에도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 여부를 평가하여 지역의 실정에 조례가 부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지역적인 도입 취지를 강화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충청남도의 입법성과평가제도의 평가기준은 헌법 및 기본권 위배사항과 상위 법령의 위배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에서 벗어나 예산의 확보와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의 내용 상 집행기관의 재량권 범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각 광역자치단체들은 조례의 합목적성 및 실효성, 내용 상 적정성 등 평가항목에 있어 유사한 평가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조례의 사후 입법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고 있음

제5절 전북형 조례입법성과평가의 방향

1. 기존 입법성과평가 제도의 시사점

○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의 입법성과평가 조례를 분석한 결과 조례의 합목적성, 실효성, 적정성 등 평가 구조와 기준이 유사하며, 대체로 입법 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실효성, 적정성, 공평성, 민주성, 지역 실정 부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하여 규범적 측면의 평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조례의 수혜자에 대한 범주화나 조례에 기반을 둔 사업 등의 성과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경기도는 사전/사후입법영향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를 통보받는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있음

○ 광주광역시는 주관부서에 개선 권고가 통보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더불어 시장은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부서의 개선 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전라북도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주요 평가기준, 입법(성과)평가 조례에 소관부서의 입법(성과)평가 반영, 집행기관 차원의 입법(성과)평가 종합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이며, 조례의 수혜자에 대한 범주화나 조례에 기반을 둔 사업 등의 성과 등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을 보여줌

2. 전북형 입법성과평가 기준 설정을 위한 전라북도 현황 점검

○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활동이 성과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전라북도 직무성과평가 운영지침」을 공포하여 직무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해오고 있음

○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매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고 있고, 예산의 성과보고서도 결산안과 함께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주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은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기반을 두고 시행되는데 전라북도 고유사무의 경우 자체 조례에 기반을 두고 시행되게 되어 있음

○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직무성과, 예산성과, 그리고 민간위탁 보조사업 등의 성과는 매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음

○ 전라북도에서 작성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에 고유사무 사업 예산 등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명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성과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에 따라 당해연도 조례의 성과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를 통한 예산이 반영되는 조례의 입법성과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전라북도 각 부서에서 직무성과에 반영하는 만족도, 체감도, 인지도 등의 각종 비계량지표가 일부 조례와 연동되는 경우 당해연도 조례 관련 사업 수혜자 등을 통한 조례 성과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조례의 입법성과평가가 가능할 것임

3. 전북형 입법성과평가 시범 진행을 위한 평가 기준 설정

○ 다른 시도의 입법성과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준을 7개 차원, 22개 항목으로 설계하여 각각의 조례에 대한 종합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 7개 차원의 가중치는 ①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20, ②조례의 실효성 20, ③조례 내용의 적정성 20, ④조례의 공평성 10, ⑤조례의 민주성 10, ⑥지역실정 부합성 10, ⑦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으로 설계[4)]

○ 22개 항목의 가중치는 각 차원에 포함된 항목끼리 동일하도록 설계[5)]

○ 예산의 성과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례의 실효성 차원에서 조례 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항목을 포함하고 별도로 조례 관련 예산사업 현황을 검토하여 예산성과 달성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조례입법성과가 만족도, 인지도, 체감도와 같은 비계량 형태의 결과 지표화를 통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례 내용의 적정성 차원에서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항목을 설계함[6)]

○ 종합성과와는 별개로 종합의견을 점수화하되 평가 관련 종합 의견을 별도로 제시하여 정리 가능하도록 함

○ 항목별 평가는 매우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긍정 중에 선택이 가능하도록 5점 척도를 활용함

○ 종합성과, 종합의견, 만족도 등 각각의 100점 환산 점수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성과 점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

---

4) 조례입법성과평가가 제도화되고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반영되는 경우 차원별 가중치는 AHP 등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차원별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5) 조례입법성과평가가 제도화되고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반영되는 경우 동일 차원내 항목별 가중치는 AHP 등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6) 집행기관의 직무성과에 적용되는 비계량지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만족도, 인지도, 체감도 등의 측정이 가능한 조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부서명	조례명								최종 입법 성과 평가
차원 입법성과	항목 입법성과	매우 부정 1	부정 2	보통 3	긍정 4	매우 긍정 5	입법 성과 평가	만족도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5	1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2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20		
	★지원대상/수혜자및범위의적정성/만족도점검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1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실정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15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A 100	C 100	D 1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B 100		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7) 특정 조례의 최종입법성과평가D=종합성과A*60% + 종합의견B*20% + 만족도C*20%; 앞의 산출식은 조례별로 만족도까지 평가하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이며,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조례입법성과평가가 제도화되고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반영되는 경우 D를 추출하기 위한 A,B,C의 가중치도 AHP 등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임

4. 전북형 입법성과평가를 입법성과평가 조례 제정 방향

○ 주요 자치단체의 선행 조례 입법성과평가 조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 제정 방향을 제안함

① 입법 목적 등이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② 입법성과평가의 대상은 전라북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하며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제외함

③ 입법성과평가는 투입, 과정, 산출 성격의 내용에서 나아가 조례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 등을 검토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조례 관련 사업의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반영 여부, 조례 관련 수혜자 등의 관리 및 운영 실태

④ 입법성과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위원 구성에 규범적인 측면의 전문가 이외에 입법평가 또는 성과평가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함

⑤ 다수의 조례에 대한 입법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연구기관에 위탁

⑥ 입법성과평가의 반영과 관련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라북도의회에 보고하는 예산의 성과계획 서 및 예산의 성과보고서 등 조례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분야를 제시

전라북도 조례의 입법성과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 등이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성과평가"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 전라북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전라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라북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조례 관련 사업의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반영 여부

6. 조례 관련 수혜자 등의 관리 및 운영 실태

7.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8.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5. 그 밖에 입법평가 또는 성과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라북도의회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법평가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평가 관련 업무 등의 위탁) ① 의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평가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전라북도의회에 보고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예산의 성과보고서

2. 그 밖에 조례의 성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분야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장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제1절 평가 대상 ····· 37
제2절 평가결과 분석 ····· 39
제3절 평가결과 요약 ····· 105

제1절 평가 대상

1. 평가 대상 기준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청의 환경녹지국/복지여성보건국/새만금해양수산국/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한 조례들 중 ① 제정된 지 2년 이상 경과, ② 법령위임이 규정이 없는 자치법규에 국한하여 평가를 실시함

○ 또한, 2020년 예산/결산서 및 예산의 성과 계획서/보고서 예산/결산 연계가 가능한 조례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사업을 연결지어 분석하고자 하였음

○ 평가대상 조례는 다음과 같음

부서	조례 순번	조례	제정연도 시행연도
환경보전과	1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2018.12.28. 2019.03.28.
	2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2017.04.14. 2017.04.14.
	3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05.03. 2019.05.03.
	4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2001.01.07. 2015.10.12.
자연생태과	5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2018.10.05. 2018.10.05.
	6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2015.10.30. 2017.08.11.
산림녹지과	7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2015.10.12. 2015.10.12.
사회복지과	8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 ·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9.22 2019.11.11
	9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8.07.10 2021.10.01
건강증진과	10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1.29 2016.01.29
	11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2004.11.12. 2018.08.10.
	12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2017.06.02. 2017.06.02.
	13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2011.11.11. 2017.11.17.
여성청소년과	14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2018.03.30. 2018.03.30.
	15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2013.11.08. 2014.01.01.

부서	조례 순번	조례	제정연도 시행연도
	16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2013.08.09. 2015.05.01.
	17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2.06. 2016.08.12.
노인복지과	18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2018.02.02. 2018.02.02.
	19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2015.01.30. 2016.04.29.
	20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2017.12.29. 2020.07.13.
	21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4.14. 2017.04.14.
	22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0.12. 2015.10.12.
장애인복지과	23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015.10.12. 2021.12.10.
	24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제정)	2014.01.06. 2015.05.01.
	25	전라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2016.03.11. 2016.03.11.
보건의료과	26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	2015.10.30. 2015.10.30.
	27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2004.11.12. 2015.10.30.
	28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악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2015.10.12. 2015.10.12.
새만금개발과	29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2005.07.15. 2005.07.15.
수산정책과	30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2017.05.19. 2017.05.19.
해양항만과	31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2015.08.07. 2020.12.11.
	32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2005.09.23. 2021.08.13.
	33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6.12.30. 2020.12.11.

2. 평가 기준

○ 앞의 29쪽에 제시한 전북형 입법성과평가 시범 진행을 위한 평가 기준 적용: 7개 차원, 22개 항목으로 각 조례에 대한 종합평가 시행

3. 전문가의 평가

○ 조례의 담당 실국에 따라 환경 전문가 1명, 복지 전문가 1명, 법학전문가 2명, 성과관리/성과평가 전문가 2명 등 총 6명이 참여하였으며, 각 조례별로는 전문가 5명이 평가함

제2절 평가결과 분석

1.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환경보전과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3.75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9.11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9.33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75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24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1.18**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	84	-
도비결산	-	-	-
예산성과 달성률	102%	100%	100%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특이사항 및 의견 없음

○ 사업대상자는 상인들과 협약을 통해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환경관련 타위원회의 자문필요

○ 정의 관련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데, 용어의 정의 관련 규정과 근거 법령 제시 필요

○ 제3조 제목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서 “자발적”은 무의미하므로 “협약의 체결”로 수정 필요.

○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근거 법령 제시 필요

2.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환경보전과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2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2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10.00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24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4.24**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224	347	218
도비결산	-	-	345
예산성과 달성률	102%	99%	128%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기금을 운용하여 시설 보조함, 국비재원의 한계 및 지속적인 수요 상승으로 예산 확보 필요함

○ 시설 부지 선정에 설치 동의하여 진행함, 사업 대상자에 적합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환경관련 타위원회의 자문필요

○ 관련 위원회 구성이 필요

○ 우수조례, 전북 생활폐기물처리 한계점에 와있음.

3.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환경보전과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25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9.11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9.67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8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24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2.15**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370	550	569
도비결산	-	-	414
예산성과 달성률	102%	99%	128%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폐비닐, 농약 빈병, 폐자재 등을 수거 지원 함

○ 국비 소진 시에 예산을 보완하여 진행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국비 소진 시 도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도비 운용의 제한 문제

○ 정의 규정에 법령상의 근거를 명기할 필요

○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근거 법령 제시 필요

○ 제2조 정의 규정에 법령상의 근거를 명기하고,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4.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환경보전과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25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8.22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9.67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38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9.2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14.6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5.32**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50.83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	-	-
도비결산	201	565	1,973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전라북도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 가능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환경관련 타조례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제4조 정의 규정에 환경 관련 법령 근거 명기 필요

○ 규정의 체계, 내용(특히 제7조 내지 제11조) 및 문구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좀 더 체계적으로 조항들을 정비할 필요 있음 도민, 언론, 학교,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의 타당성 문제

○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근거 법령 제시 필요

5.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자연생태과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5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2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2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8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14.6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8.98**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17,279	54,801	63,177
도비결산	2,733	7,464	11,243
예산성과 달성률	100%	100%	100%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위원회 위원 혹은 사업 대상자를 조사 대상자 선정 가능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지속적인 조례운영이 필요

○ 조례의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을 두루 갖춘 모범적인 조례임

○ 우수한 조례로 평가됨

6.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자연생태과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25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9.11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9.33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63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24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1.56**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13,854	11,537	11,533
도비결산	10,850	10,520	7,900
예산성과 달성률	204%	217%	120%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성과 추출이 필요하며, 지속이 필요한 사업으로 여타 지자체의 자치법규보다 선제적으로 운용함

○ 코로나 이슈로 인하여 지역 및 관광지의 사업 중단으로 결산이 미 집행된 경우가 존재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달성률 변화에 유의. 적정한 목표설정 필요

○ 전라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필요

○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용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 명시 필요

○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근거 법령 제시 필요

7.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산림녹지과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5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9.56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9.67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8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24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2.85**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609	649	697
도비결산	75	90	72
예산성과 달성률	103%	130%	101%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도비로 사업 진행,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단체활동 제약으로 미신청되어 사업 중단

○ 사업적 성격으로 수혜자 다수 확인, 조사 대상자 적합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달성률 변화에 유의. 적정한 목표 설정 필요

○ 산림관련 타위원회의 자문필요

○ 임업의 필요성이 별로 필요치 않고 자연림존치 필요

○ 전문가위원회나 권리구제 면에서 필요한 조항 누락

○ 조항의 성격이 임의규정 형태로 규정되어 정책의 안정적 수행 불안정

○ 위원회 구성 검토

8. 전라북도독립유공자기념사업및예우 · 지원에관한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사회복지과	전라북도독립유공자기념사업및예우 · 지원에관한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8.67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9.33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8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9.6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1.48**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독립유공자기념사업및예우·지원에관한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2,943	5,780	5,008
도비결산	37	38	40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보조금 정액제 지급,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로 이견 발생은 없음

○ 지자체마다 사업비가 상이하여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위원회 구성 필요성

○ 해당사업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 여부 검토

9.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사회복지과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7.33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8.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10.00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9.6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12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89.05**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0	45	0
도비결산	40	45	25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2019년도부터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운영함,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결정(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도 동일)하며 운영비 및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위원회 구성 필요성 검토

10.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건강증진과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7.33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8.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10.00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9.6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24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89.17**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	-	-
도비결산	30	30	30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전부 도비로 진행되며 관련 예산성과지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위원회 구성 필요성 검토

11.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건강증진과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5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2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2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10.00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14.36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8.86**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100	100	0
도비결산	99	100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전북음식문화대전 관련 예산사업으로 운영

○ 향토음식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사 대상자 적합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심의회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 기능.

12.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보건의료과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25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2.44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2.67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8.63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7.2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74.19**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6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400	399	421
도비결산	400	399	421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을 통해 통합되어 운영되며, 해당 사업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사업의 실효성도 없어서 폐지하거나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용어의 정의 규정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함

○ 조례의 목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족

○ 일부 용어의 정의 규정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추상적임

○ 전문가위원회 구성 필요

13.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보건의료과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2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2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8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14.48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8.36**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708	987	1,378
도비결산	708	97=87	1,378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심리치유지원 예산사업 운영,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위원회 구성 방법 누락 등 구체성 없음

○ 용어의 정의 규정이 없음. 용어의 정의 규정 삽입하고, 위원회 구성 방법 명기 등 구체성 필요

○ 자치단체장의 의무 및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사항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음

14.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여성청소년과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2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2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63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3.63**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8,256	15,740	16,692
도비결산	1,300	2,332	2,485
예산성과 달성률	100%	100%	109%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국·도비 사업으로 운용,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음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제2조 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15.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여성청소년과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75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2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2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75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3.5**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1,246	1,170	1,222
도비결산	1,246	1,170	1,222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국·도비 사업으로 운용,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음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정의 규정중 일부 조항은 근거 법령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누락됨

○ 용어의 정의는 법령 근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조 제1호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아동의 연령기준이 다양하므로 “아동”이란 000법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등으로 관련 근거 법령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위원회 구성도 검토해야 함

○ 제5조 규정에서 두 문장 공히 주어(지원대상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지원대상은” 추가할 필요. 즉,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체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한다” 로 수정해야 함. .

16.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여성청소년과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4.22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1.67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8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8.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10.96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79.73**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4.1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	-	-
도비결산	-	-	-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해당 예산 사업은 없으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상을 심사함 해당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상시위원회가 아닌 심사위원회 구성임. 전북청소년육성위원회가 역할 대신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위원회 규정은 있으나 구성 방법 등이 누락되고 구체성이 떨어짐

○ 위원회 구성 방법 등 명기 필요성 검토. 단, 타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수도 있음

○ 단순한 시상보다는 상금 등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17.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여성청소년과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3.75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2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2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75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13.4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6.9**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964	980	998
도비결산	102	100	121
예산성과 달성률	100%	100%	105%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1,300~1,400명 대상으로 센터를 통해 사업 진행함, 위원회 및 센터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와의 통합 고려

○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라북도청소년위원회에서 역할 대신 규정

○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조례와의 통합 고려

○ 용어의 정의에 "민간단체" 정의 규정 누락됨. 민간단체는 다양하므로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령상의 용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가위원회는 사업의 전반에 대해 통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그 기능, 역할 및 한계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조례에 추가하여 전문성과 적절성 확보 필요

18.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노인복지과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25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0.67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2.33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8.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8.38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7.2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8.6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69.43**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54.1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	-	-
도비결산	-	-	-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비예산 사업으로 운용함

○ 특이사항 및 의견 없음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예산도 없고, 대부분 선언적 의미의 조항들임. 조례의 실효성 의문

○ 용어의 정의에 법령상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

○ 조례의 내용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자치단체장의 주요 의무 및 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임의규정의 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선 필요

○ 추상적인 용어가 많고, 용어의 정의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도 없음

○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고령친화” “고령친화영향평가” 등의 용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불분명함.

19.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노인복지과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2.89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6.33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10.00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9.6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48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83.3**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5.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	-	-
도비결산	36	36	36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예산사업을 통해 운용함[8)]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대상 조사 가능함 혹은 시군 담당공무원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다고 하나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없음

8) 2019, 2020년 예산성과 보고서 상 확인이 불가함

20.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노인복지과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2.5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9.33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3.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50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7.6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10.84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72.77**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61.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	-	-
도비결산	-	-	-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도비 기준으로는 비예산 사업으로 전부 국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이사항 및 의견 없음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장기요양요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필요

○ 장기요양요원만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부적절

○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필요

○ 자치단체장의 의무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리구제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조례 개선 필요

21.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노인복지과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75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7.78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8.33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63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9.2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13.48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3.17**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82.5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	-	-
도비결산	-	-	-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강제성은 없어 실효성은 없으나 개정 및 폐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밝힘

○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계획 단계에 그치고 있음

○ 위원회의 경우, 노인복지정책위원회와 함께 겸임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노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음

○ 사업은 중장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대상자를 중장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는 구성하나 구성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못함

○ 용어의 정의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

○ 정의 규정 보완하고 위원회 구성 방법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2.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노인복지과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25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2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9.33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63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2.21**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4.1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9]	4,125	5,124	6,205
도비결산	41,246	48,767	59,645
예산성과 달성률	100%	100%	113%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도·시군 사업으로 운용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일부 용어의 정의가 법령상의 근거를 갖추지 못함

○ 용어의 정의 규정에 법령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9) 예산의 성과보고서 상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예산 사업에 대한 결산액을 지칭함

23.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장애인복지과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9.11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2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10.00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3.11**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7,201	8,978	10,528
도비결산	6,313	6,869	7,585
예산성과 달성률	110%	111%	136%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국·도비 사업으로 운용함

○ 특이사항 및 의견 없음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위원회 구성 필요성 검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계획 수립, 조정 및 평가하는 전문가위원회 구성 필요

24.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장애인복지과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9.11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9.33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75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2.19**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73.33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69	63	540
도비결산	53	49	47
예산성과 달성률	100%	0%	100%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특이사항 및 의견 없음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조례명은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지원 조례>라고 되어있는데 내용은 출산지원금 규정만 있음

○ 위원회 구성 필요성 검토

○ 해당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무 및 장애인가정의 권리구제에 대해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항 개정 필요

○ 정확한 명칭은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임.

25. 전라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장애인복지과	전라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5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7.78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8.67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8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89.83**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4.1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	-	87
도비결산	83	87	87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전부 도비로 운영함

○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 운영' 예산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10], 위탁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한 곳이 선정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위원회 구성 필요성 검토

○ 편의증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촉진단 활동 근거나 필요성이 적음

10)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 운영' 예산사업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예산성과 보고서 상에서 확인이 불가함

26.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보건의료과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25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9.11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2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8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2.24**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211	241	310
도비결산	65	90	90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관련 단체 지원 사업으로 예산 집행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용어의 정의 규정에 법령 근거 포함 필요. 예를 들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용어를 사용할 것

○ 전문가위원회 구성 필요

27.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보건의료과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9.11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2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63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9.2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0.94**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3,214	2,990	3,199
도비결산	417	372	359
예산성과 달성률	-	-	-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용어의 정의 관련 규정이 없음

○ 관련된 전문가위원회 구성 필요

28.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악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보건의료과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악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25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2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9.33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75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2.33**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4.1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악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32	35	30
도비결산	22	19	19
예산성과 달성률	106%	102%	100%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특이사항 및 의견 없음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정의 관련 조항이 누락되었는데, 용어의 정의 관련 규정과 근거 법령 제시 필요

○ 해당 조례상의 예방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검토 필요

29.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새만금개발과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4.67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9.33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63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11.08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88.71**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83.33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확인불가	114	116
도비결산	116	114.5	116
예산성과 달성률	700	233	100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집행함

○ 위탁사업 대상자들을 통한 조사 가능함

○ 보조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여 보조금 관리 측면이 강함, 이에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내용상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형태라서 다른 보조금 지급과 같은 조건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맞는 형태로 개정이 필요함

○ 달성률 변화에 유의. 적절한 목표 설정 필요

○ 현재 보조금은 공모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교부 결정방식 등에 대한 좀 더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조례운영시 새만금관련 타위원회 자문필요

○ 용어의 정의 규정 삽입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 필요

30.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수산정책과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2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2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75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14.6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9.35**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7.5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504	1,192	347
도비결산	확인불가	35	확인불가
예산성과 달성률	100%	100%	103%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추후에 관련 법률이 신설됨

○ 국비 지원이 60%, 도비가 40%로 구성되어 있음

○ 56개 공동체 어업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가능함

○ 사업자 선정에 있어 중앙 및 자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짐; 사업자 선정은 조례와는 무관하여 조사 대상으로는 부적합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지역협의회 구성 필요

○ 사업자 선정 시 조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필요

31.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해양항만과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2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2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10.00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14.6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9.6**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115	5,324	8,504
도비결산	115	115	0
예산성과 달성률	119%	100%	100%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함

○ 예산사업 중 '해수욕장 관리' 예산사업은 도비로 운용함

○ 수상레저산업자문위원회 위원을 통한 조사 가능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해수욕장관리 예산을 국비확보가 가능 하도록 개정필요

○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잘 갖춘 모범적인 조례임

○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자치단체장의 의무,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필수적인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수상레져산업은 민간사업으로 활성화 시켜야 함

32.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해양항만과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5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7.78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2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8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24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1.4**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1,268	1,580	1,643
도비결산	1,405	1,406	1,837
예산성과 달성률	195%	100%	148%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전체 중 50% 비율을 도비로 운영함

○ 단순 화물 유치 외에도 자동차 벌크화물 등을 지원함

○ 화물 유치 관련 수혜대상자를 통한 조사 가능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달성률 변화에 유의. 목표설정의 적정화 필요

○ 위원회 구성 필요성 검토

○ 조례운영 시 해양항만관련 타위원회의 자문 필요함

33.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해양항만과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성과/차원	**입법성과/항목**	**성과평가**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4.50
	타 조례와의 충돌성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9.11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2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8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14.6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위원회 지속 필요성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위원회 구성 적정성	
종합성과		**98.09**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그 밖의 의견	

2) 조례관련 예산사업 현황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2018	2019	2020
결산액	10,948	9,963	4,338
도비결산	371.6	589.4	624
예산성과 달성률	100%	101%	210%

3) 담당부서 면담 결과

○ 국·도비 사업(국비7:도비3)으로 운영함

○ 전라북도 해양산업육성위원회 위원을 통한 조사가 가능함

4) 평가관련 종합 의견

○ 달성률 변화에 유의. 적정한 목표설정 필요

○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잘 갖춘 모범적인 조례임

제3절 평가결과 요약

조례 순번	조례	종합성과점수	종합의견점수
1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91.18	96.67
2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94.24	96.67
3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92.15	96.67
4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95.32	50.83
5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98.98	100.00
6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91.56	96.67
7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92.85	96.67
8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 · 지원에 관한 조례	91.48	96.67
9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9.05	96.67
10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89.17	96.67
11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98.86	100.00
12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74.19	60.00
13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98.36	96.67
14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93.63	96.67
15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93.50	96.67
16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79.73	94.17
17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96.90	90.00
18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69.43	54.17
19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83.30	95.00
20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72.77	61.67
21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93.17	82.50
22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92.21	94.17
23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93.11	96.67
24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 · 출산 · 양육 지원 조례	92.17	73.33

조례 순번	조례	종합성과점수	종합의견점수
25	전라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89.83	94.17
26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	92.24	96.67
27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90.94	96.67
28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악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92.33	94.17
29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88.71	83.33
30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99.35	97.50
31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99.60	100.00
32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91.40	100.00
33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98.09	100.00

❍ 조례입법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종합성과점수가 가장 우수한 조례는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로 나타났음

❍ 조례입법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종합의견점수가 가장 우수한 조례는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나타났음

❍ 조례입법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종합성과 및 종합의견점수가 모두 우수한 조례는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나타나 종합성과와 종합의견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됨

제4장 조례입법성과 만족도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 109
제2절 조사결과 ····· 111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설계

구분	조사 설계
조사대상	환경복지 조례 관련 사업 수혜자
표본설계	- 조례 관련 사업 수혜자 대상으로 표본 추출 - 유효 응답자 수 : 13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URL-Callback조사
표본추출방법	-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례 담당 부서에서 선정
표본오차	- 표본 및 유효 응답자 수가 적은 관계로 미기재
조사기간	2022.01.29.~2022.02.08
조사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지방자치연구소)

2. 척도(Scale)

○ 만족도 측정을 위해 각 조례별로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설문 항목을 변환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수혜자 만족도를 계산함

■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점	2점	3점	4점	5점

■ 100점 환산법

$$X_i' = 20 \times \sum_{i=1}^{n} X_i, \quad X_i : \text{핵심성공요인 점수}$$

○ 지표별로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구 분	5점 척도(점)	100점 환산	환산법
전혀 그렇지 않다	1	20	20 x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0	20 x 2
보통	3	60	20 x 3
그런 편이다	4	80	20 x 4
매우 그렇다	5	100	20 x 5

제2절 조사결과

1. 전문가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요약

전문가 평가 기준 입법성과/차원	전문가 평가 배점기준	전문가 평가 (평균)	전문가 평가 (100점환산)
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15	14.47	96.47
조례의 실효성	20	17.93	89.65
조례 내용의 적정성	20	18.59	92.95
조례의 공평성	10	9.94	99.40
조례의 민주성	10	9.73	97.30
지역 실정 부합성	10	9.58	95.8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10.68	71.20
종합성과	100	90.90	**90.90**
종합의견	100	90.25	90.25

○ 전문가 조례입법성과평가 결과, 종합성과는 90.90점으로 높은 성과달성 수준을 보이며,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및 개정/폐지에 대한 종합의견은 90.2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결과를 보임

○ 전문가 평가 결과는 조례입법성과평가 대상 33개 조례 기준으로, 조례의 담당 실국에 따라 환경과 복지 분야 전문가 1인, 법학전문가 2인, 성과관리전문가 2인이 조례입법성과평가를 진행하여 조례별로 전문가 5인이 평가함

2. 조례입법성과평가 대상 조례 관련 사업 수혜자 만족도조사 결과

설문 문항	전문가 평가기준 연계	고객만족 배점기준	고객만족 결과	고객만족 결과 (100점환산)
1.조례인지도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18.75	15	80.00
2.조례에 의해 관련 사업 예산의 적정 확보와 집행	조례의 실효성	25.00	17.69	70.76
3.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지원 대상 및 수혜자의 적정 선정	조례 내용의 적정성	12.50	10.00	77.68
4.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지원 대상 및 수혜자의 사후 관리		12.50	9.42	
	조례의 공평성			
	조례의 민주성			
5.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조례에 따른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지역 실정 부합성	12.50	10.00	80.00
6.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의 적정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8.75	14.42	76.91
	종합만족	100	76.54	**76.54**
7.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 필요성	종합의견	100	100.00	72.31

○ 조례입법성과평가 대상 조례와 관련된 사업 수혜자 만족도조사는 ①조례의 인지도, ②예산 집행 적정성, ③지원 대상 및 수혜자 선정 적정성, ④지원 대상 및 수혜자 사후관리 적정성, ⑤조례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적정성, ⑥조례 관련 위원회 운영 적정성, ⑦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으로 구분하여 설문함

○ 만족도 조사 결과, 조례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종합만족은 76.54점으로 나타났으며,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에 해당하는 종합의견은 72.31점으로 나타남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개요 …… 115
제2절 입법성과평가 논의 및 기존 입법성과평가 제도의 시사점 …… 115
제3절 전북형 입법성과평가를 위한 전라북도 현황 및 평가 기준 설정 …… 117
제4절 전북형 입법성과평가를 위한 전라북도 조례 시범 평가 …… 118
제5절 전북형 조례입법성과평가의 제도화 방향 …… 120

제1절 연구 개요

○ 전라북도의 각종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조례 활용에 따른 입법 영향 및 입법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여 환경/복지 관련 조례 중 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별 사후 입법평가와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의 예산성과평가로 자치법규 정비와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규범적 평가에서 나아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등에 대한 실효적인 성과평가를 토대로 전라북도에 특화된 입법성과평가를 제도화하고자 전국 주요 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성과평가를 점검하고, 제도 현황과 평가 기준 등을 점검하였음

○ 이를 토대로 환경복지위원회 관련 제정된지 2년 이상 경과한 환경/복지 조례 중 33개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른 공무원 면담 및 전문가 평가와 관계자 체감 만족도를 측정함

제2절 입법성과평가 논의 및 기존 입법성과평가 제도의 시사점

1. 논의를 통한 입법성과평가의 정의

○ 입법성과는 논리상으로는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 등을 표기하는 지표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점검함

○ 기존의 입법성과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는 수준, 즉 제도화를 위한 투입의 성과, 제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의 성과, 그리고 제도화가 이뤄지는 산출의 성과 등을 의미하는 데에서 머물고 있었음

○ 이에 한 걸음 나아가 입법의 영향 측면에서 각급 기관에서 시행 중인

법률이나 조례가 입법 목적에 따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및 정도를 강조함

○ 이러한 측면에서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조례의 입법성과란 전라북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입법 목적에 따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수준 및 정도"**라고 정의하였음

2. 기존 입법성과평가 제도의 시사점

○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의 입법성과평가 조례를 분석한 결과 조례의 합목적성, 실효성, 적정성 등 평가 구조와 기준이 유사하며, 대체로 입법 근거 및 적법성(적합성), 실효성, 적정성, 공평성, 민주성, 지역 실정 부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하여 규범적 측면의 평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조례의 수혜자에 대한 범주화나 조례에 기반을 둔 사업 등의 성과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라북도는 이 분야에 특화시켜 제안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일부 도의회의 경우 의회에서 입법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였음

○ 아울러 평가의 결과를 통보받는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거나 집행기관이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 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였음

○ 여기서 전라북도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주요 평가기준, 입법(성과)평가 조례에 소관부서의 입법(성과)평가 반영, 집행기관 차원의 입법(성과)

평가 종합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이며, 조례의 수혜자에 대한 범주화나 조례에 기반을 둔 사업 등의 성과 등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을 확인함

제3절 전북형 입법성과평가를 위한 전라북도 현황 및 평가 기준 설정

1. 전라북도 성과평가 등의 현황

○ 전라북도 차원에서 조례입법성과평가를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전라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전라북도 직무성과평가 운영지침」을 참고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매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고 있고, 예산의 성과보고서도 결산안과 함께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함

○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작성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에 고유사무 사업 예산 등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명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성과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에 따라 당해연도 조례의 성과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를 통한 예산이 반영되는 조례의 입법성과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더불어 각 부서에서 직무성과에 반영하는 만족도, 체감도, 인지도 등의 각종 비계량지표가 일부 조례와 연동되는 경우 당해연도 조례 관련 사업 수혜자 등을 통한 조례 성과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조례의 입법성과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2. 전북형 입법성과평가 시범 진행을 위한 평가 기준 설정

○ 다른 시도의 입법성과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준을 7개 차원, 22개 항목으로 설계하여 각각의 조례에 대한 종합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되 7개 차원의 가중치는 ①입법근거 및 적법성(적합

성) 15, ②조례의 실효성 20, ③조례 내용의 적정성 20, ④조례의 공평성 10, ⑤조례의 민주성 10, ⑥지역실정 부합성 10, ⑦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로 설계함; 다만 적정 가중치는 조례입법성과평가가 제도화되어 시행에 들어갈 때 AHP 등을 통한 적용을 제안함

○ 예산의 성과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례의 실효성 차원에서 조례 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항목을 포함하고 별도로 조례 관련 예산사업 현황을 검토하여 예산성과 달성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조례입법성과가 만족도, 인지도, 체감도와 같은 비계량 형태의 결과 지표화를 통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례 내용의 적정성 차원에서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항목을 설계

제4절 전북형 입법성과평가를 위한 전라북도 조례 시범 평가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전라북도청의 환경녹지국/복지여성보건국/새만금해양수산국/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한 조례들 중 ① 제정된 지 2년 이상 경과, ② 법령위임이 규정이 없는 자치법규 에 국한하여 33개 조례에 대해 전북형 입법성과평가 시범 진행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7개 차원, 22개 항목)하여 조례의 담당 실국에 따라 환경 전문가 1명, 복지 전문가 1명, 법학전문가 2명, 성과관리/성과평가 전문가 2명 등 총 6명이 참여하였으며, 각 조례별로는 전문가 5명이 평가함

○ 조례입법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종합성과점수가 가장 우수한 조례는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로 나타났음

○ 조례입법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주관적인 종합의견점수가 가장 우수한 조례는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

례',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나타났음

○ 조례입법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종합성과 및 종합의견점수가 모두 우수한 조례는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나타나 종합성과와 종합의견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됨

○ 전문가 평가 결과 차원별 100점 환산 점수는 7개 차원 중 5개 차원에서 9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조례의 실효성(계획, 예산확보 및 집해, 사업수행) 차원은 89.6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차원은 71.2점으로 나타나 향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유의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별로 수혜자 등 정책고객 등에 대한 확보나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혜자 등에 의한 개별 조례성과에 대한 만족도 점검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하여 시범적으로 13명의 유효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례 인지 여부, 조례에 의해 관련 사업 예산의 적정 확보와 집행,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지원 대상 및 수혜자의 적정 선정,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지원 대상 및 수혜자의 사후 관리,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조례에 따른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의 적정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 수혜자 등의 만족도 조사 결과 조례 인지도와 주민의견 수렴이 80점대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70점대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조례의 의해 관련 사업 예산의 적정 확보와 집행 문항이 가장 낮은 70.76점을 기록함

제5절 전북형 조례입법성과평가의 제도화 방향

1. 조례 입법성과평가 제도화를 통한 조례입법성과 고도화

○ 주요 자치단체의 선행 조례 입법성과평가 조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 제정 방향을 제안함

① 입법 목적 등이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② 입법성과평가의 대상은 전라북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하며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제외함

③ 입법성과평가는 투입, 과정, 산출 성격의 내용에서 나아가 조례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 등을 검토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조례 관련 사업의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반영 여부, 조례 관련 수혜자 등의 관리 및 운영 실태

④ 입법성과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위원 구성에 규범적인 측면의 전문가 이외에 입법평가 또는 성과평가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함

⑤ 다수의 조례에 대한 입법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연구기관에 위탁

⑥ 입법성과평가의 반영과 관련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라북도의회에 보고하는 예산의 성과계획 서 및 예산의 성과보고서 등 조례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분야를 제시

2. 시범적인 조례 입법성과평가를 통한 조례입법성과 고도화

○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33개 조례에 대한 분석 및 공무원 면담, 전문가 평가, 관련 고객 체감도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① 기본적으로 의회에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나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사업 및 예산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이렇게 명시해야만 어떠한 조례가 실효적으로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가 있음

② 각 조례별로 수혜자 및 위원 관련 정책고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조례의 목적이 어느 정도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자체평가의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③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위원회 활용이나 자체 관리하는 고객 등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형태의 만족, 인지, 체감 등에 대한 간이 조사 혹은 직무성과관리와 관련된 비계량지표 형태의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화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함

부록

제1절 조례 입법성과평가 상세 결과 …… 125
제2절 조례 입법성과평가 대상 조례 모음 …… 158
제3절 조례 입법성과평가 관련 다른 자치단체 조례 사례 …… 222

제1절 조례입법성과평가 상세 결과[11)]

1.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조례

환경보전과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1.67	8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95.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95.56	86.67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96.67	86.67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7.50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0.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1.60	68.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11) 상기 제3장 조례입법성과평가 기준을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각 조례의 세부항목에 대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을 기준으로 변환시켰음

2.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환경보전과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00.00	10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00.00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0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100.00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100.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1.60	68.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3.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환경보전과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5.00	8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95.56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86.67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98.33	93.33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75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1.60	68.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4.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환경보전과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5.00	8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91.11	73.33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98.33	93.33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3.75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7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92.00	92.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7.33	10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86.67
	★위원회 지속 필요성		10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10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10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50.83	55.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46.67

5.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자연생태과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6.67	9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00.00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0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75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7.33	10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86.67
	★위원회 지속 필요성		10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10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10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100.00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100.00

6.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자연생태과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5.00	8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95.56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86.67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96.67	86.67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6.25	100.00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8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1.60	68.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7.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산림녹지과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6.67	9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97.78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93.33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98.33	93.33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75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1.60	68.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8. 전라북도독립유공자기념사업및예우 · 지원에관한조례

사회복지과	전라북도독립유공자기념사업및예우 · 지원에관한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00.00	10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93.33	8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96.67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86.67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75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96.00	96.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0.00	6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9.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00.00	10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86.67	86.67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86.67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86.67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9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86.67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86.67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86.67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100.00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100.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96.00	96.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0.80	64.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10.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증진과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00.00	10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86.67	86.67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86.67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86.67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9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86.67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86.67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86.67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100.00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100.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96.00	96.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1.60	68.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11.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건강증진과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6.67	9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00.00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0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100.00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100.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5.73	92.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86.67
	★위원회 지속 필요성		10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10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10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100.00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100.00

12.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건강증진과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5.00	8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62.22	66.67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6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6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63.33	73.33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6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6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6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86.25	100.00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8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6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72.00	72.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0.00	6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60.00	6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60.00

13.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건강증진과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3.33	8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00.00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0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75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6.53	96.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86.67
	★위원회 지속 필요성		10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10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10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14.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여성청소년과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00.00	10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00.00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0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6.25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8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0.00	6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15.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여성 청소년과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8.33	9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00.00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0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7.50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0.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0.00	6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16.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여성 청소년과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00.00	10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71.11	93.33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6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6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58.33	8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46.67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46.67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6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75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80.00	8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73.07	92.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73.33
	★위원회 지속 필요성		73.33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53.33
	위원회 구성 적정성		73.33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4.17	95.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17.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 청소년과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1.67	9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8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00.00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0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7.50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0.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89.33	10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10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10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73.33
	위원회 구성 적정성		73.33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0.00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80.00

18.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노인복지과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5.00	8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53.33	53.33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53.33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53.3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61.67	8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53.33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53.33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6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80.00	8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8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83.75	9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9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9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6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72.00	72.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57.33	6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46.67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54.17	55.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53.33

19.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노인복지과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00.00	10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64.44	73.33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6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6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81.67	93.33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73.33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73.33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86.67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100.00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100.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96.00	96.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3.20	76.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5.00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0.00

20.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노인복지과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83.33	10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8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7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46.67	6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4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4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65.00	8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6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6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6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5.00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80.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76.00	76.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72.27	68.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73.33
	★위원회 지속 필요성		73.33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73.33
	위원회 구성 적정성		73.33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61.67	7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53.33

21.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과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8.33	9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88.89	8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93.33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93.3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91.67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93.33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93.33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8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6.25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8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92.00	92.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89.87	96.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8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93.33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8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10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82.50	85.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80.00

22.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과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5.00	8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00.00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96.67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86.67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6.25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8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0.00	6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4.17	95.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23.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장애인 복지과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00.00	10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95.56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86.67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0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100.00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100.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0.00	6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24.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장애인 복지과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00.00	10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95.56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86.67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96.67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86.67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7.50	100.00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0.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0.00	6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73.33	8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66.67

25. 전라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장애인 복지과	전라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6.67	9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88.89	93.33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86.67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86.67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93.33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86.67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86.67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75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0.00	6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4.17	95.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26.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

보건의료과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5.00	8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95.56	86.67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0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75	100.00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0.00	6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27.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과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3.33	8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95.56	86.67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0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6.25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8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92.00	92.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0.00	6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6.67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28.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악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건강증진과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악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5.00	85.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00.00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96.67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86.67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7.50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0.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0.00	6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4.17	95.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93.33

29.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새만금 개발과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3.33	8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73.33	73.33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73.33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73.3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96.67	86.67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6.25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8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73.87	76.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73.33
	★위원회 지속 필요성		73.33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73.33
	위원회 구성 적정성		73.33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83.33	86.67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80.00

30.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수산정책과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00.00	10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00.00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0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7.50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0.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7.33	10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86.67
	★위원회 지속 필요성		10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10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10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97.50	95.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100.00

31.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해양항만과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100.00	10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100.00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10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0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100.00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100.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7.33	10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86.67
	★위원회 지속 필요성		10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10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10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100.00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100.00

32.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해양항만과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6.67	9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88.89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80.00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86.67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0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75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61.60	68.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60.00
	★위원회 지속 필요성		6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6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6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100.00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100.00

33.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수산정책과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차원 환산 점수	항목 환산 점수
입법근거 및 적법성 (적합성)	상위법령 위배성(자치사무조례는위임조례아님)	96.67	90.00
	타 조례와의 충돌성		100.00
	★유사 조례로 인한 통합 필요성		100.00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계획 충실성	95.56	100.00
	★조례관련 예산 확보 집행 충실성		86.67
	조례관련 집행기관 사업 수행 충실성		100.00
조례 내용의 적정성	지원관련 규정 여부	100.00	100.00
	★지원대상/수혜자 및 범위의 적정성/만족도 점검 여부		100.00
	지원 집행의 실현가능성		100.00
	위탁사무 대상 적정성		100.00
조례의 공평성	조례 상 차별금지 조항 표기	100.00	100.00
	조례 상 차별관련 불합리성		100.00
조례의 민주성	★입법예고 수행 여부	98.75	100.00
	★조례 제 ·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100.00
	조례 관련 이의 제기 여부		100.00
	조례 체계 및 용어의 주민 수용성		95.00
지역 실정 부합성	★전라북도 현실과 조례의 부합성	100.00	100.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여부	97.33	100.00
	★위원회 운영 실적 여부		86.67
	★위원회 지속 필요성		100.00
	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성		100.00
	위원회 구성 적정성		100.00
종합의견	★조례의 현행 유지 필요성	100.00	100.00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		100.00

제2절 조례입법성과평가 대상 조례 모음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제정) 2018-12-28 조례 제 46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우수업소 지원을 통해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상 사업자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전라북도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군과 협의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5조(우수업소 지원) 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 지원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소 이용활성화) ① 도지사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전라북도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우수업소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우수업소 영업자는 관계공무원의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소 관련정보를 게재한 전라북도 누리집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계도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우수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2017-04-14 조례 제 44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어촌 및 단독주택 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거점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받아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결과 요청)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처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5-03 조례 제 46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빈봉지, 폐부직포, 칼라필름, 트레이(모판 등)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도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업무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비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을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시장·군수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를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조사 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2001-01-07 조례 제 2722호
(일부개정) 2008-07-10 조례 제 3342호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3395호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4-04-04 조례 제 3847호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2014-06-27 조례 제 3869호
(일부개정) 2014-10-22 조례 제 3886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5-01 조례 제 3988호
(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 408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도 및 시·군 사업자 및 도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제2조(기본이념) ①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②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도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환경에 대한 오염을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도민 참여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2. "자연환경" 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3. "생활환경" 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 및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 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및 악취 등 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6.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도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제5조(도의 책무) ①도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1. 7, 개정 2014. 6. 27>
8.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도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 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③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시·군의 책무) 시·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의 환경보전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도 또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③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실시

제9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제10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도민의 환경 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백서) ①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도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

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보고) ①도지사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 및 그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년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제 2 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4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 다)에 의한 전라북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4. 3. 2014. 4. 4, 2014. 10. 22, 2015. 5. 1>
⑤도지사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없이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⑥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도 환경기준의 설정) ①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영향 검토) 도지사는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제18조(규제조치) <삭제 2015. 10. 12>

제19조(환경보전에 관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도와 시·군은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 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제2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도와 도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존과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여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2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도지사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이를 통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도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 시설의 건설,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 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도민의 참여) ①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집행 및 평가 등 환경행정에 도민이 참여하는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 5. 1>

②제1항의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1. 7, 2015. 5. 1>

③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

1.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의 작성·실천·평가사업
2.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의 작성·실천에 대한 협력사업
3.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여론수렴 및 국내외적인 교류·협력사업
4. 도민·기업·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운동
5. 그린웨이 환경축제 사업
6. 그 밖의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④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

제23조(정보의 공개) ①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 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3>

제24조(환경교육·홍보) 도지사는 시·군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도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도지사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도민, 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은 물론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제2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도지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할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제 3 장 재정지원 및 광역 환경협력 등

제27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도지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③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기술지도, 조언, 세제상의 조치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15. 10. 12>

1. 환경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기술의 개발
2. 환경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
3. 대기환경조사 지도 및 감시활동
4. 환경보전 캠페인 및 환경인 소통 화합행사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사업

④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기관 및 공무원 등이 지역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제2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도지사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정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국제협력 강화)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 6. 18 조례26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7 조례2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0 조례3342,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제3조(주사무소 등 위치)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초기에는 토지매입, 건축 등 사무실을 준비할때까지 전라북도청에 둘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1)부터 (2)까지 생략

(3)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 시·군, 사업자”를 “도 및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자”로,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제2항 중 “시·군”을 각각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4)부터 (8)까지 생략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4 조례3847,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제1조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 제14조제4항 “전라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전라북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4. 6. 27 조례3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1)부터 (45)까지 생략

(46)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의 “경제자유구역청”을 삭제하고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삭제한다.

(4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5. 5. 1 조례39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2 조례4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제정) 2018-10-05 조례 제 45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로 인한 전라북도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등)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 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등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등의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미세먼지등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4. 다음 각 목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가. 사업장
   나. 자동차 및 도로
   다. 공사장 및 건설기계
   라. 농업잔재물 소각 및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
   마. 발전소
   바.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원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취약계층 및 주요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후 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지원)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 및 주요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히 유지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물품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취약계층 및 주요 이용시설에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정화설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경로당, 각 급 학교(유치원 포함)
2. 영・유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노인, 임산부, 폐질환・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특히 취약한 도민
3. 교통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기준, 방법 및 시설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전라북도 미세먼지등 예방 및 저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라북도의원 2인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5조(협력 등) 도지사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 한다.

제16조(미세먼지 저감 도민실천단)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등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미세먼지 저감 도민실천단(이하 “도민실천단”이라 한다)이 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실천단 구성 시 민간단체, 지역활동가, 기업 및 관련전문가 등 미세먼지, 대기오염, 보건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민실천단은 도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관련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도민에게 홍보하며,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 및 노출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 할 수 있다.

제17조(도민설명회) 도지사는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등으로 도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9조(주민제안 등)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정) 2015-10-30 조례 제 4127호
(일부개정) 2017-08-11 조례 제 44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란 도내 시·군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개정 2017. 8. 11>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의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태관광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1>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
2.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
3.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
4.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5. 생태관광 전문인력 육성, 주민 경영능력 강화
6. 생태관광지 마케팅, 홍보
7.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8. 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용도지역 관리
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센터의 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이 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조성)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시·군에서 실행할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이 경우 원활한 실행을 위해 시·군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1>
② 도지사는 시·군이 생태관광지 조성과정에서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의 조성재원에 있어서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와 도비, 시·군비가 일정비율로 협의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8.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11 조례44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제정) 2015-10-12 조례 제 40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종사인력을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사방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임업인등을 위한 시책으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업인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사업
3.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도단위 행사 또는 전국단위 행사 지원
4. 그 밖에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9-22 조례 제 4460호
(일부개정) 2019-11-11 조례 제 47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지”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선 항일 독립운동 현장 또는 독립유공자의 생가와 거주지 및 활동지를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4. “유족 또는 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독립운동 기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3·1만세운동 기념사업
5.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6.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묵념을 해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儀式上)의 예우 준수
2.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30만원의 호국보훈수당 지급 <개정 2019.3 11. 11>
3. 애국지사 사망 시 100만원의 조의금 지급
4.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애국지사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5.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 지원
6.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으로서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필요 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의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1 조례470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7-10 조례 제 3346호
(일부개정) 2015-05-01 조례 제 3979호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1-10-01 조례 제 50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도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전라북도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모든 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수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21. 10. 1.>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예:6.25행사)
2. 도민(회원, 주민, 학생)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4.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1.>
2.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3.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3)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를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4)부터 (47)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생략

부 칙<제5000호, 202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1-29 조례 제 42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미용, 피부미용, 박람회 등 홍보활동 등
2. 이·미용 경연대회, 피부미용 예술경연 대회 등
3.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단체·협회 등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조요청) 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04-11-12 조례 제 3079호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3395호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 4121호
(일부개정) 2018-08-10 조례 제 45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향토음식” 이란 전라북도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특색있는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삭제 2015. 10. 30>

제3조(심의회) ①향토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 향토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30>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30>

1. 향토음식의 지정과 지정음식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01. 4. 20, 2003. 11. 14〉
2. 향토음식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1. 14, 2015. 10. 30〉
3. 기타 향토음식의 발굴 · 개발 · 육성 ·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3. 11. 14, 2015. 10. 30〉
4. <삭제 2015. 10. 30>

③ <삭제 2015. 10. 30>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제3조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30>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언론인
3. 식품관련학과 교수
4. 향토음식 지정업소 대표 및 요리전문가
5. 음식관련 협회 대표
6.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회원
7. 그 밖의 향토음식에 관심이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본조신설 2018. 8. 10] ①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5. 10. 30>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15. 10. 30>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심의회에서 해촉을 의결하였을 경우 <개정 2015. 10. 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0.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10. 30>

제6조의2(의견제출) 도지사는 및 시장·군수는 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에 앞서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 5. 1] <개정 2003. 11. 14, 2009. 4. 3>

제7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 10. 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향토음식의 발굴 등)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발굴·개발·육성 및 보전을 위하여 향토음식의 지정·평가, 연구사업, 음식대전 및 품평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9조(지정) ① 시장·군수가 발굴·개발한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1. 조리방법설명서
2. 시장·군수의 의견서
3. 지정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현황(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음식가격, 전화번호, 위치 등)

③ 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 10. 30>

④ 도지사는 향토음식 지정을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을 평가할 때에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심의회에서 정한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 10. 30>

② 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향토음식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11조(연구업무의 범위) 향토음식의 연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

1. 향토음식의 발굴·개발 연구
2. 향토음식조리백서의 발간
3. 지정된 향토음식의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
4. 향토음식의 연구발표회·평가회 및 업소모델 연구

5. 그 밖의 향토음식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

제12조(연구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8. 8. 10>

② 연구업무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연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연구업무 추진상황의 확인을 위한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조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연구위탁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수탁자가 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 8. 10>

제13조(예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비영리법인, 대학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향토음식 발굴육성 등을 위한 음식대전
2. 향토음식의 홍보 및 대중화를 위한 품평회 등 [본조신설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 8. 10>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부 칙 〈1995. 6. 3 조례236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정한 향토전통음식과 향토전통음식업소는 각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향토전통음식과 향토전통음식업소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998. 5. 1 조례2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20 조례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 14 조례297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정한 향토전통음식업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향토음식업소로 본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5항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조례4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0 조례456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최하는 심의회부터 적용한다.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6-02 조례 제 44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음주 예방에 기여하고 도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제32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도민을 위하여 금주에 관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금주교육 및 청소년이 아닌 도민에 대한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금주 및 절주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도지사는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반영)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2011-11-11 조례 제 3649호
(일부개정) 2017-11-17 조례 제 44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도 병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 11. 17>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매뉴얼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 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라북도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군수,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④ 도지사는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 예방 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을 예방한 도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7 조례4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18-03-30 조례 제 45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이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 2013-11-08 조례 제 38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 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8.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13세 이상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전라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한다.

제6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2.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법에 의한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만13세 이상의 입양아동에 한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되, 지급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육수당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안내) 도지사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9조(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지원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도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입양 축하금 등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라북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 축하금 등의 적용례)제6조에 따른 입양 축하금 등의 지원은 입양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제정) 2013-08-09 조례 제 3793호
(일부개정) 2015-05-01 조례 제 3982호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효행, 선행, 면학, 예·체능 등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발부문과 인원) ①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한다.

1. 효행부문 :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
2. 선행부문 : 이웃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행한 청소년
3. 면학부문 :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4. 예·체능부문 :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기량이 탁월한 청소년
5. 국제화부문 :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소년
6.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제4조(자격요건) 수상대상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상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전라북도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및 각급 학교장,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도지사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전라북도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해 구성된 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여금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의 결정)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시상시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중복 및 재수여 금지)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및 재수여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11조(기록 보존) 도지사는 청소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전라북도 포상 조례」를 준용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1)부터 (58)까지 생략

(59)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생략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2-06 조례 제 3954호
(일부개정) 2016-08-12 조례 제 43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6. 8. 12>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전라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다만,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 8. 12>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행정부지사, 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 8. 12>

1.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교수
3. 전라북도 관내 경찰청 및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4. 전라북도 관내 고용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업무담당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전라북도가 대안교육기관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대안교육기관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실태 조사
4.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6.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0.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11.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기타 도지사가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12 조례4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2018-02-02 조례 제 45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전라북도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시군에서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의거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해당 시군에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도 및 시·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시·군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2015-01-30 조례 제 3946호
(일부개정) 2016-04-29 조례 제 42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전라북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및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29 조례4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 2017-12-29 조례 제 4505호

(일부개정) 2020-07-13 조례 제 4795호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7.13.>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7.13.>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5호, 2020.7.13.>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4-14 조례 제 44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라북도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노후지원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국가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지원법」 제10조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시군별 또는 권역별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중·장기적인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 연구 개발
2.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장년층생애재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라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0-12 조례 제 40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 경제적 ·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라북도 내 노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방지 · 해소하는 한편,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역할을 수행 할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재가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여”란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제6호의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 등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제1호의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서비스지원대상자”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의 서비스 중 어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야간까지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이 급여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의 개선 ·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임) ① 도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급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군에 급여 또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 및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는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군은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급여대상에서 누락 또는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서비스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및 해당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시 · 군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평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시설장의 의무) ①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운영사항에 대한 도 및 시·군의 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사업수행결과 및 운영비집행사항 등을 도 및 해당 시·군에 보고하고 도 또는 각 시·군은 그 업무를 확인 · 검사하여 본 사업의 적절성 · 객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 ·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 시설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 관련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정) 2015-10-12 조례 제 4093호
(일부개정) 2018-12-28 조례 제 4609호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7-13 조례 제 4795호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12-10 조례 제 50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 발굴
6.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추진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 ① 도지사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고, 도의 지방공기업 등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 공기업 등은 항상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관련하여 매년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10.]

제8조(고용촉진)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5.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도지사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0.>

1. 도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
3. 「의료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제9조(취업 후 적응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고용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배치, 작업 보조구·작업 설비 등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비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및 기능보강비 설치비 및 기능보강비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필요적 경비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구체적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관리)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4609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생략

부칙 <제4795호, 2020. 7. 13.>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2021.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정) 2021-10-01 조례 제 50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 및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산모”란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하며,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을 포함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친권자”란 「민법」 제90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정책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수립하는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정책의 추진체계
3.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관련 현황 조사
4.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정 난임 및 출산 지원 사업
2. 장애인가정 자녀 양육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정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4.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안정적 출산·양육 환경 조성

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출산지원금을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출산지원금 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시장·군수는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전라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3-11 조례 제 42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전라북도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시·군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시·군 센터의 설치 권장) ①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지킴이센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 지킴이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시·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킴이센터에 직원을 채용할 경우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와 시·군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

(제정) 2015-10-30 조례 제 41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이즈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민의 에이즈를 예방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에이즈 예방·관리, 감염인의 차별과 편견 방지,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사회분위기 전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전환과 함께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한 민관 공동대처로 에이즈 예방환경을 개선하여 사회 안전 환경 조성 에도 병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이즈”란 후천성면역결핍증을 말한다.
2.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이즈의 심각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민의 에이즈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에이즈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에이즈 예방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
3. 에이즈에 대한 상담
4. 감염인 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에이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보건의료사업계획에 포함한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에이즈 예방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2.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
3. 에이즈에 대한 상담
4.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검진 강화
5.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6. 에이즈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 환경 조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4-11-12 조례 제 3079호
(일부개정) 2007-08-03 조례 제 3283호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3395호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1-11-11 조례 제 3622호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 41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내 한센병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사업을 위하여 한센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1. 12, 2007. 8. 3, 2009. 4. 3, 2011. 11. 11, 2015. 10. 30〉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 12, 2015. 10. 30〉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
3. 한센병의 조사 · 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환자의 입원 치료시설
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 운영
7.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부랑 한센사업대상자 지도
9.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진료참여 보조 및 교육·홍보 <신설 2015. 10. 30>
10.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15. 10. 30>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 10. 30>

제3조(위탁 및 지원) ①도지사는 한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라북도지부(이하 "협회" 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전북지부(이하 "연합회" 라 한다)에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2, 2007. 8. 3, 2015. 10. 30〉

②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회와 연합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5. 10. 30>

제4조(시설의 설치 · 운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1.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요양소·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5. 10. 30>
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②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5조(활동보고) ①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분기별 1회씩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회 및 연합회는 한센병환자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 관할 보건의료원장 및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5. 10. 30>

제6조(감독 등) 위탁사무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및 처리상황 감사 등에 대하여는「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3, 2009. 4. 3, 2011. 11. 11,

2015. 10. 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 10. 7 조례23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지사와 협회장간에 체결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11. 12 조례3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3 조례3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4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2015-10-12 조례 제 40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사회분위기 전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전환과 함께 마약류 폐해에 대한 민관 공동대처로 약물 오·남용 조장 환경을 개선하여 사회 안전 환경 조성에도 병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폐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도민 홍보·계몽 및 교육
3.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와 관련 된 사업

제5조(운영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에 예산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2. 생애주기별 대상 집단별 교육 및 홍보
3. 대상자별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4.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연계
5. 약물 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회환경 조성

제6조(세계마약퇴치의 날) ① 도지사는 마약 폐해 및 마약류 수요 확산을 예방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캠페인, 교육·홍보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①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마약류중독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받은 사람의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를 실시함에 있어 마약류 중독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제정) 2005-07-15 조례 제 314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 등을 위한 민간부문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2. 기타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도가 권장하는 사업 등

제3조 (보조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신청사업과 사업의 목적
3. 추진기간
4. 사업계획서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6.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4조 (보조금 교부결정) 도지사는 제3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여부
2. 사업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3. 신청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신뢰성

제5조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법령이 정하는 사항 및 사업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목적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회에 걸쳐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 · 취소) ①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 ·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이미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이미 수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의거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사업비 정산검사) 보조사업자가 제7조 2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반납하였을 경우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7-05-19 조례 제 44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업인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3.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에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국내·국외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동체 선정 및 취소, 규약심의, 사업실태 점검
2. 공동체 평가, 우수공동체 추천
3. 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가 심의 요청한 사항
4. 공동체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협의회 구성 및 인원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 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2. 어장관리 · 수산자원관리 · 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 · 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4. 우수공동체로 육성 · 발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
5. 기타 도지사가 필요로한 사항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제정) 2015-08-07 조례 제 4047호
(일부개정) 2020-12-11 조례 제 48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수상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수상레저 산업의 진흥을 통한 수상레저 인구의 저변확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1.>

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의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스포츠”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을 말한다.
4. “수상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스포츠 활동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기반·제조·수리·교육시설, 수상관광시설을 포함한 각종 산업을 말한다.
5. “요트”란 유람·항해·스포츠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6.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수상 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7.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이란 요트 기반시설과 수상레저 장비 및 클럽하우스 등을 이용한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상레저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11.>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0.12.11.>

1. 수상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수상레저산업 육성계획
3. 수상레저산업 기반시설의 개발계획 및 육성방안
4. 그 밖에 수상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진흥과 활성화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2.11.>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수상레저스포츠 관련 각종 경기대회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수상레저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5. 수상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상레저산업과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수상레저산업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수상레저산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도내·외 전문가
3. 수상레저스포츠 관련 경기·행사·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수상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상레저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상레저산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1.>

③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12.11.>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책 발굴 및 지원)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수상레저시설의 조성)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상레저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강좌 개설) ① 도지사는 요트 등 수상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수상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해양레저 프로그램 운영이나 체험사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기 대회 개최)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수상레저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등의 지원)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2.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지원

3. 수상레저산업 관련 각종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수상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1.>

제21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59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제정) 2005-09-23 조례 제 3143호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3395호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1-11-11 조례 제 3635호
(일부개정) 2015-05-01 조례 제 3979호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2015-07-03 조례 제 4022호
(일부개정) 2017-05-19 조례 제 4421호
(일부개정) 2021-08-13 조례 제 49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항만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물 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 자동차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1. 8. 13.>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내 항만에 컨테이너화물, 자동차 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선박회사를 말한다.<개정 2021. 8. 13.>
3.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8. 13.>
4. "항만하역사업자"란 도내 항만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

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8. 13.>

5. <삭제 2021. 8. 13.>

제3조(재정지원 대상 등)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9, 2021. 8. 13.>

1. 화주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개정 2021. 8. 13.>
3. 국제물류주선업자
4. 항만하역사업자 <개정 2021. 8. 13.>
5. 그 밖에 도내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화물 유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신설 2021. 8. 13.>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화주,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화물 유치 지원금 <개정 2021. 8. 13.>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개설 장려금 <개정 2021. 8. 13.>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손실보전금 중 일부<개정 2021. 8. 13.>
4.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전비용 중 일부<개정 2021. 8. 13.>
5. 그 밖에 도내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화물 유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개정 2021. 8. 13.>

③ 재정지원의 기간 및 세부기준은 도내 항만이 위치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7. 5. 19,개정 2021. 8. 13.>

제4조(지원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운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 국제운송 사업허가의 종류·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3.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및 신청금액 <개정 2017. 5. 19>

제5조(지원예산 확보) ① 도는 항만소재 시·군과 예산부담을 50:50의 비율로 하여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3.>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도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 시군 지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신청서 제출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21. 8. 13.>

제6조(지원금의 반환) 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에게 일괄 반환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재정지원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금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책추진) 도지사는 도내 항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 이용객 및 화물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9>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8. 1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 7. 3 조례4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9 조례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3 조례4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6-12-30 조례 제 4365호
(일부개정) 2019-12-31 조례 제 4726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12-11 조례 제 48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1.>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항만물류, 조선, 수산,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오염방제,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양 정보·금융, 수산물 생산·가공·유통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수산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목개정 2020.12.11.]

1. 해양산업 환경 및 여건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해양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2.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
3.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4.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5.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6. 해양축제 및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행사 등 해양문화의 계승발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12.1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11.>

1. 당연직위원: 제2조제2호의 업무담당 실·국·본부장(해양수산, 해양레저, 경제투자)
2. 위촉위원: 도의원 및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12.11.>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8조(위원의 해촉)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의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11.>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부터 (25)까지 생략

(26)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실·국장(해양수산, 해양레저, 경제투자)”을 “실·국·본부장(해양수산, 해양레저, 경제투자)”으로 한다.

(27)부터 (3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4861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폐/개정 검토 필요]

[시행 2015. 5. 1.] [전라북도조례 제3982호, 2015. 5. 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정 · 개정이유】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5.5.1)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 반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호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청소년 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 성폭력”이라 함은 대상에 있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한다.<개정 2009. 4. 3>
3. “전자 미디어”라 함은 인터넷, 휴대폰, 기타 정보통신 네트워크, 방송 및 영상 또는 문자가 기록된 기록물 등「전기통신기본법」과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매체를 말한다.
4. “보호자 등”이라 함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 후견인, 기타 청소년을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자 또는 학교, 보육시설, 기타 시설에 있어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전자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판매,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의 성적 감정을 현저히 자극하고, 잔학성을 발생 또는 조장시키고, 자살 및 범죄를 유발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7. “필터링 기능”이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유해정보의 수신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소년 성폭력 및 유해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전라북도는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전라북도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사후관리대책을 시 · 군에게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전라북도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차단하여, 전자미디어와의 건전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사업자 및 도민, 보호자 등의 책무) 사업자 및 도민, 보호자 등은 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 노력) 청소년은 성폭력의 예방과 전자미디어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전라북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목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제10조에 따른 건전 사회환경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라북도지사는 교육청, 경찰청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2. 피해 및 가해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의 지원
3. CCTV 보급, 전담교사 확충, 자율방범 프로그램 등 예산계획 수립
4. 유해 정보 차단 시스템 교육 및 운영지침 마련
5. 유해 정보 차단 및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6. 청소년 성폭력 및 유해환경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권고) ①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2조제7호에 적합한 필터링 기능을 갖추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전자미디어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판매 또는 대여, 이용하도록 하는 전자미디어를 청소년이 사용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합한 필터링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 이용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③ 전라북도지사는 사업자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도 또는 권고해야 한다.

제9조(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① 전라북도지사는 유해정보 차단 의무 장소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와 시설책임자에 대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건전 사회환경조성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설치) 청소년 육성을 위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건전 사회환경조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전라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등 기존 관련위원회와 연계·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건전사회조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3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위원의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5. 1>

제4장 시책 평가

제15조 (시책 평가) ① 전라북도지사는 제7조에서 수립된 계획에 대한 당해연도 시책평가 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책평가보고서에는 매년 일관된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성과평가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해당 사업 등을 자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5)까지 생략
(56)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이관 검토 필요]

[시행 2019. 12. 11.] [전라북도조례 제4719호, 2019. 12. 1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전라북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사용·수익 허가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5. 10, 2014. 10. 31>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하 ” 매점 “이라 한다) 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5. 10, 2014. 10. 31, 2019. 12. 11>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4. 10. 31>
2.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되는 매점의 판매 품목은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9. 12. 11>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사용·수익 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道報)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1>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1, 2013. 5. 10, 2019. 12. 11>

1.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개정 2013. 5. 10>
2. 장애인등록증 사본(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개정 2019. 12. 11>

제5조(우선 사용·수익 허가) ① 도지사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세대주(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4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용·수익 허가 하되 1인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 5.10, 2019. 12. 11>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하고, 각 호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우선 사용·수익 허가대상자를 정한다.<개정 2013. 5. 10, 2014. 10. 31, 2019. 12. 1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개정 2014. 10. 31>
2. 저소득 장애인
3. 중증 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5.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5. 10, 2014. 10. 31, 2015. 10. 30, 2018. 12. 28, 2019. 1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을 사용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 12. 11>

제7조(사용·수익 허가 취소 등)

제8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사용·수익 허가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 4. 3, 2010. 10. 1, 2013. 5. 10, 2014. 10. 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999. 1. 12 조례26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계약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 <2000. 1. 7 조례2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0 조례2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1 조례3528,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전라북도유재산관리 조례」" 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3. 5. 10 조례37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전 조례에 의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 <2014. 10. 31 조례3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4124 복지·여성·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4610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1 조례4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재허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절 조례 입법성과평가 관련 다른 자치단체 조례 사례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 2013.07.01]

(제정) 2013-07-01 조례 제 42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②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제6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입법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주광역시 기획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

⑤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 6828호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경기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분석”이란 제4조의 분석지표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적합성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9.06.18.> [단서신설 2019.06.18.]

② 이 조례에 의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제6조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입법영향분석 기준) ①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2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사전 입법영향분석) ①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조례심의 전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사후 입법영향분석) 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7.17.>

②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 및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입법영향분석 용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입법영향분석기준 수정의 심의) 별표에서 정한 입법영향분석지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입법영향분석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제5조제1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경우, 이를 모범 조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조례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제5항에 따른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2020.12.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영향분석주기)① 최초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이 조례 시행 후 2016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②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최초 사후 입법영향분석 이후 4년마다 매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부칙 <2018.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 2021.04.30]

(일부개정) 2021-04-30 조례 제 49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4.30.>

1. 삭제<2021.4.30.>

2. 삭제<2021.4.30.>

제4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개정 2021.4.30.>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개정 2021.4.30.>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4.30.>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30.>

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4.30.>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4.30.>

⑧ 삭제<2021.4.30.>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신설 2021.4.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개정 2021.4.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법평가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 등 실시)<개정 2021.4.30.>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1.4.30.>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1.4.3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21.4.30.>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617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11호 2021.4.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 위촉위원의 임기특례)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9일까지로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 2021. 7. 9.]

[전라남도조례 제5291호, 2021. 4. 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조례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사후 입법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 입법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라남도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기관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사후 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교육감이 정한다.

③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제6조(사후 입법평가 실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사후 입법평가 대상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후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서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사후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사후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주관부서의 사후 입법평가서 검토
2. 개선 권고안 마련
3.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및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사후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수는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의 교육 및 행정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법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지원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 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후 입법평가 반영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주관부서의 사후 입법평가 반영 계획보고서를 취합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④ 교육감은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사후 입법평가 반영) 전라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5291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시행 2022.03.04]

(일부개정) 2022-03-04 조례 제 30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8.>

1. “자치법규”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삭제<2018.2.28.>

3. “입법평가”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를 별표의 입법평가에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제7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개정 2018.2.2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조직ㆍ인사 또는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2.28.>

제4조(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2.3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2018.2.28.>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3.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시민단체에서 활동중인 사람

5.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삭제<2018.2.2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2.30.>]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2.3.4.>

④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7.15.>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6.12.30.>]
제7조(입법평가 실시) 입법평가는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2.3.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16.12.30.>]
제8조(용역실시)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16.12.30.>]
제9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2.28.>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6조로 이동 <2016.12.30.>]
제10조(입법평가 분석지표의 변경)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2.28.>
[제목개정 2018.2.28.]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위원회의 입법평가 결과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개정 2018.2.2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2.28.>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①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2.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 시행 이후 제3조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조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

법규 정비에 따른 자문 및 용역은 이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른 자문 및 용역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01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1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4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2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1. 13.]

[전라북도조례 제4141호, 2015. 11. 1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 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 대상) 사후평가 대상은 전라북도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평가기준 및 시기) ①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② 사후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제6조(조례 사후평가서의 작성)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사후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조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조례 사후평가위원회 구성) ① 교육감은 사후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교육 및 행정 전문가 등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사후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

⑤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후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사후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수당은「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교육감은 위원회의 사후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 · 운영)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141호,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문헌 】

1.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국회입법조사처, 2018, 「조세특례성과평가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31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2020년도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충남연구원, 2020,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25개 조례 시범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0, 「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20, 「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2. 논문

Byung-Jae Lee,Tae Wan Kim,Jaekwon Suh,O. Fiona Yap. 2021.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Explaining ordinance proposal in Busan Metropolitan Council."*『ASIA&THE PACIFIC POLICY STUDIES』. Volume8, Issue1. pp.15-41.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2020.“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2020.07.

김용기·한동훈. 2018.“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⑧.

김준. 2016.“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2016. 6. pp.5-29.

김창식·김태경·곽기영. 2018.“사회적 네트워크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4권 제2호. 2018. 6. pp.133-141.

김한균·임정호·김정연. 2016. 형사사업 분야 의원 입법의 성과와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창. 2010. “입법평가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방법론의 유용성 검토에 관한 연구.” 입법평가 연구 제2호. 2010. 3. pp.67-93.

박영도. 2010. “입법평가제도의 전망과 발전방향.” 입법평가 연구 제2호. 2010. 3. pp.67-93.

배건이. 2015.“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 광주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15-17-①-3.

백옥선. 2015.“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15-17-①-4.

서일정. 2018.“공동발의 네트워크에서 국회의원의 네트워크 구조가 입법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Vol. 18 No. 9 pp.433-440.

송귀종. 2021. “조례 입법여향평가제도의 도입과 평가기준의 정립에 관한 소고.”『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71호 제21권 제3호. pp.207-242

심우민. 2014. “의회 입법영향분석 가이드라인 구상.” 입법평가연구 제8호. 2014. 10. pp.193-232

윤계형. 2015.“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 경기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15-17-①-2.

윤광진·정창화. 2012.“입법영향평가제도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12-24-③.

윤석진. 2010. “입법과정에서의 입법영향평가와 사회영향평가의 활용.” 법학논문집 제34집 제1호 vol 34. No. 1, pp.5-34.

윤현진. 2015. “입법영향분석이 입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한국규제법학회』

임영덕. 2020.“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중심으로.”『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Issue Paper 20-14-④.

장혜윤·조경훈. 2018. “지방의회 입법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경기도 의회의 연정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112호). pp.215-246.

정창화. 2007. “입법영향평가(GFA) 제도에 관한 연구: 독일 GFA 평가방법과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5권 2호, pp.97-118.

정창화. 2014. “입법영향평가(GFA) 제도의 비교연구 – 오스트리아, 스위스 및 독일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EU연구 no.36, pp.161-188.

정회옥·장혜영. 2013.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국회 생산성과의 관계: 18대 국회를 대상으로.”『한국정치연구』. 22권 2호).

차재권·정호영. 2020. “지방의원의 개인적 배경이 입법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부산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21세기정치학회보』. 제30집 1호.

차현숙. 2015.“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15-17-①-4.

차현숙. 2015.“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조례 입버평가 모범조례(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15-17-①-1.

차현숙. 2015.“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Ⅱ – 조례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16-17-⑤.

차현숙. 2015.“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Ⅲ – 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정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17-15-⑤.

최유. 2015.“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15-17-①-5.

최윤철. 2010. “입법영향의 예측과 평가에 관한 연구.” 입법평가 연구 제2호. 2010. 3. pp.37-66.

함성득·임동욱. 2000.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식한 국회의 현실.”『의정연구』 10. pp.92-122.

홍준형 외. 2006. “입법평가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LECG Korea 보고서.

3.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평가위원회비대면화상회의 개최”, 2021.09.3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조례사후 입법평가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